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2005. 12

전병목 ·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조세로 인해 경제활동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는 조세의 원칙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입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아울러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에 차이를 둬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이다. 또한 개인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도 중립적이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조세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각 개인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소득세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모두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나라별로 여러 형태로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기능과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세부담 격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영업자가 갖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인의 자영업자에의 선호도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요소들도 국가전체적인 효용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소득세제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을 추정하고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자영업 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차등소득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과약을 추정에 있어 최근 발전된 연구기법의 이용 및 자료를 반영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기여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모형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에 존재하는 회피할 수 없는 위험과 개인의 자영업 선호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 나타나는 최적의 노동배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세 정책방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전병목 박사와 안종석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준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 아주대학교 현진권 교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김정현, 이은경 주임연구원과 자료와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윤혜순, 안상숙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만큼 지속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이슈는 많지 않다. 과세형평성 문제는 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낮은 소득과약률에 기인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회피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로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란 원칙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국민의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영업부문으로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노동공급이 소득과약률 제고 등 조세환경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낮은 소득과약률은 조세형평성 유지 차원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정책 수행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부담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대한 고려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러한 소득변동 위험이 낮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험요인은 보험시장을 통해 회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회피적(Risk-averse)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두 직업 사이의 위험도 차이가 소득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개인의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로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노동시장 구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구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하여 소득종류별 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실효소득세부담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부담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소득세부담의 경우 자본축적의 저해, 탈세가능성 등으로 유도하는 자영업자 감소효과가 탈세유인 증가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증가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일자리가 많지 않는 등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하는 바, 향후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행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단순경비율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
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제
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소득세구조는 노동시장의 왜
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
할 수 있다. 추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동 부분으로부터 자영업자 유출
을 억제하였으며 보건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
가함으로써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 소득세정책은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단순경비율 등의 조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방식보다는 산업별 비용구조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영업주가 되고
자 하는 개인적 선호와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노동구성이 사
회적 최적상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
우 우리나라의 최적 피용자 비중은 0.6759로 나타나 현재의
0.7044보다 약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회피할 수 없는 위
험으로 인한 자영업자로의 이동 제한효과가 개인의 자영업자 선호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여 최적수준보다 피용자규모가 크게 형성
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른 소득과악률 수준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이 총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
는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영업자 비중은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
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인 최적수준보다 낮게 나타

나는 것은 영국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개인별 직업선택결과를 최적상태로 이행케 하는 차등조세정책이 추진될 경우, 소득자별로 적용될 차등소득세율은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효세부담은 0.6~1.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위험기피도에 따라 1.3~3.5%포인트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세 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들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률적인 변화는 피용자의 비중이 최적수준보다 높다는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자 혹은 피용자 일방의 노동탄력성이 증가할 경우(혹은 감소할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변동하였다. 소득과악률 변화 가능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과악률 수준이 낮아질수록 최적피용자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 변화폭도 소득과악률 상승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와 피용자에 대한 차별적 소득세제는 노동시장의 직업선택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는 소득세제는 노동자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대규모가 균형수준보다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균형수준보다 높은 피용자규모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등의 정책은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악률이 높아질수록 최적 피용자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수증대 등의 추가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과악률 제고정책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과악률 제고정책을 통해 충분한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개인의 직업

선택결정과 연계된 소득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료의 한계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가정된 자영업부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부문과 법인부문의 근로자당 자본량이 다를 것이며 이러한 자본량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에서 이용되는 모수 β 의 변화는 B의 변화를 초래하며 두 모수의 변화는 균형근로소득자 비중을 변화시키게 되어 향후 동 부문에의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한 평균 세부담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부담률이 근로자평균 3.34~6.84%, 사업소득자평균 13.96%인 데 비해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4년 세부담률은 근로자평균 2.69(전체가구)~3.35(납세자가구)%, 자영업자 0.78~2.9%로 자영업자가구가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 자료상의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의 70%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사업소득자의 평균적인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암묵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탈세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탈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목 차

I. 서론	17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21
1. 소득유형별 소득세 과세제도	21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21
나. 이자소득	22
다. 배당소득	24
라. 부동산임대소득	24
마. 사업소득	24
바. 근로소득	25
사. 일시재산소득 및 연금소득	28
아. 기타소득	28
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9
차.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33
2. 소득세와 자영업자 규모	35
가. 배경	35
나. 이론적 검토	37
다. 자영업자 현황 및 추이	40
라. 소결	56
3. 소득유형별 과세차등 사례	57
가. 프랑스	58
나. 일본	64

III.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71
1. 배경	71
2. 이론모형	72
3. 모의실험	77
4. 소결	85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88
1. 법정세부담 비교	92
2.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 분석에 대한 문헌조사	98
가. 국내문헌 조사	99
나. 국외문헌 조사	105
3.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116
가.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정보의 특징과 의미	117
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	124
다.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률 비교	126
4. 소득축소보고율 추정	133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140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46
참고문헌	152

표 목 차

<표 II- 1> 근로소득공제액	26
<표 II- 2> 연금소득공제액	28
<표 II- 3> 소득공제 내용	30
<표 II-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31
<표 II- 5> 세액공제 내용	32
<표 II-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33
<표 II- 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2004년 귀속소득)	34
<표 II- 8>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	42
<표 II- 9> OECD 국가의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비중	43
<표 II-10> 자영자 비중 추정결과	49
<표 II-11> 비농업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 수	51
<표 II-12>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변화추이	52
<표 II-13> 산업별 소득률 변화추이	53
<표 II-14> 산업별 상대소득률 변화추이	54
<표 II-15>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60
<표 II-16> 소득수준별 적용세율 및 산출세액 (2004년 귀속소득)	60
<표 II-17> 소득세 최저과세점(면세점) 내역 (급여생활자의 경우, 2002년)	66
<표 II-18> 급여소득공제제도의 개요	69
<표 III- 1> 파라미터 값의 국제비교	80
<표 III- 2> 소득과약률 변화에 따른 최적피용자 비중 변화	82
<표 III- 3> 최적차등소득세율	83

<표 III- 4> 총소득의 변화	83
<표 III- 5> 순소득의 변화	84
<표 III- 6>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85
<표 IV-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 및 세액공제 차이	93
<표 IV- 2> 법정세부담 비교	96
<표 IV- 3>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 문헌 분류	103
<표 IV- 4>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 -클러스터 분석결과	126
<표 IV- 5>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 (2003년, 전체가구)	127
<표 IV- 6>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 (2004년, 전체가구)	129
<표 IV- 7>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 (2003년, 남세가구)	130
<표 IV- 8>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 (2004년, 남세가구)	131
<표 IV- 9> 자영업자가구의 법정세부담과 조사된 세부담 (2004년)	132
<표 IV-10>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137

그림 목 차

[그림 II-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23
[그림 II- 2] 근로소득세액의 계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7
[그림 II- 3] 소득세와 자영업자 규모의 상관관계	39
[그림 II- 4]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추이	44
[그림 II- 5]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 (1985년)	44
[그림 II- 6]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 (2003년)	45
[그림 II- 7]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 (1985년)	45
[그림 II- 8]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 (2003년)	46
[그림 II- 9] 비농업 자영업자 비율변화 및 소득세부담률 변화 (1985~2003년)	47
[그림 II-10] 우리나라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세부담률의 추이	47
[그림 II-11]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55
[그림 II-12]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55
[그림 II-13] 보건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56
[그림 VI- 1] 가계소득과 소비함수	113

I. 서론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만큼 지속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이슈는 많지 않다. 과세형평성 문제는 주로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소득과 악률에 기인하여 초래되는 소득세부담의 회피 문제로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란 원칙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국민의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낮은 소득과 악률 문제는 크게 제도적 요인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것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허용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등으로 사업자 매출 검증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악률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수요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거나 개인들의 높은 기업가정신 등의 요인에 의해 자영업부문으로 많은 노동력이 공급되어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소득의 축소신고 유인이 높아지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영업부문으로의 과도한 노동공급이 소득과 악률 제고 등 조세환경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낮은 소득과 악률은 조세형평성 유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정책 수행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소득보전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EITC)의 경

우에도 그 주된 계층에 대한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면적인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 중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의 수납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정책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의 과약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어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소득과약 현실과 과세형평성 달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소득세제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각종 특별공제 등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나타나는 세제측면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약 수준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차등적인 세부담의 절대적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과약 정도를 추정해 보는 것은 소득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부담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대한 고려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러한 소득변동 위험이 낮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험요인은 보험시장을 통해 회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두 직업 사이의 위험도 차이가 소득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직면하는 자영업자와 불확실성이 없는 소득을 향유하는 근로자 모두 위험회피적(Risk

averse)임을 가정하면 자영업자들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 분산방법 (Risk trading)이 제한된다면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적수준보다 위험을 내포하는 경제활동이 적게 공급될 것이다.¹⁾

즉 소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위험회피적인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면 동 부문으로의 노동공급이 최적수준보다 낮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효용극대화 원칙에 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비금전적 선호도를 반영하여 자영업부문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 균형상태에서 자영업부문에 대한 비금전적 선호현상으로 노동공급이 최적수준보다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²⁾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의 불확실성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소득세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의 제도적 차이와 함께 이론적, 실증적 모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한다.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는 주어진 경제여건하에서 현재의 직업선택 결과가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는 수준인지 살펴본다. 소득과세로 인해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직업선택이 최적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 그 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위험분산 혹은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 중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추가적으로 향후 최적상태로의 노동배분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소득세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실증적 분석은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행태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

1) Kilstrom and Laffont, 1979.

2) Parker, 2001.

자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한다. 소득과약률의 직접적 추정은 현재 소득세제가 제공하는 차별적 공제제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기준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분포형태가 외국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소득세부담이 자영업자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경비율(혹은 단순경비율)제도가 업종별 노동공급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규모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구축과 모의실험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동배분이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최적수준이 아니라면 최적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업종별 차등소득세율 수준에 대해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하고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허용하는 추가적인 공제제도가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괄하여 향후 소득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1. 소득유형별 소득세 과세제도³⁾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8종류가 있다.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되며, 이 단계의 소득이 소득공제전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성격상 수입금액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에는 항목별특별공제(itemizations)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있다. 표준공제는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제수준은 종합소득자 60만원, 근로소득자 100만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종 공제를 고려한 과세표준(tax base)이 확정되면

3) 『조세개요』(재정경제부, 2005) 및 국세청 보도자료(2005)를 요약.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2005년 현재의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4천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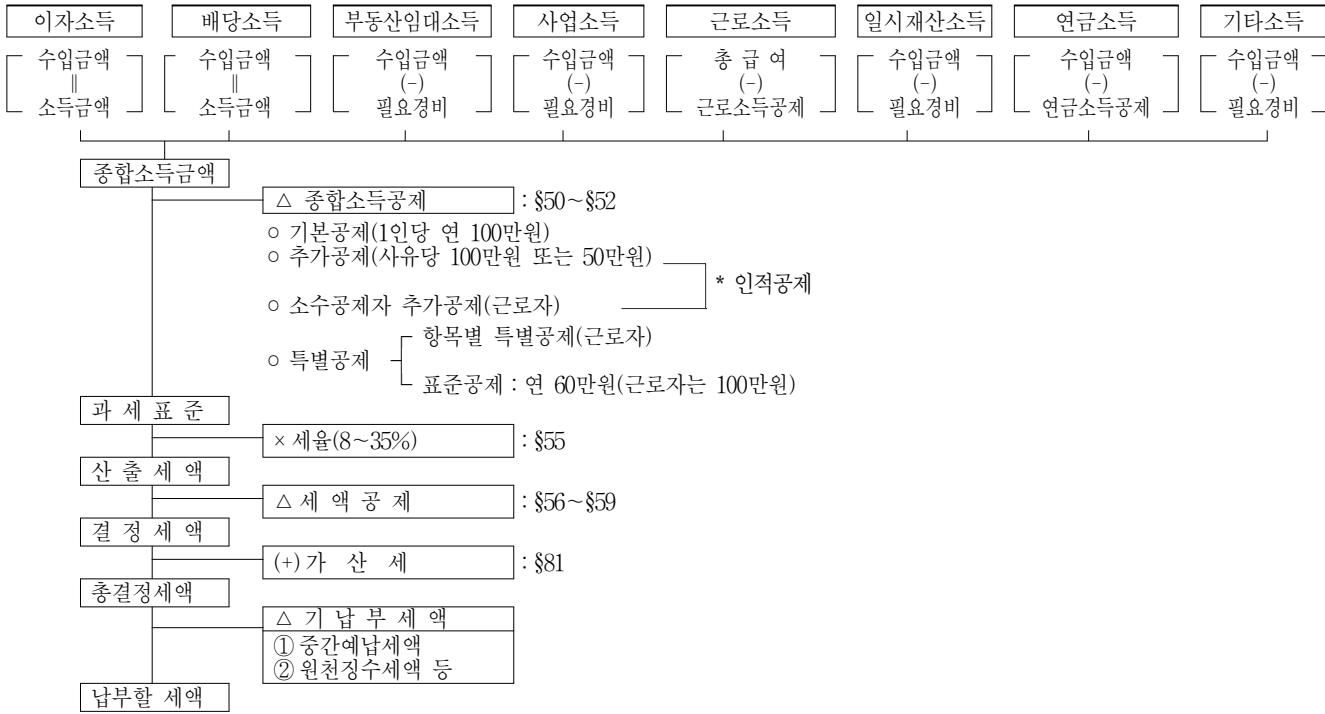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 구해진다. 총결정세액에 대해 그해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급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 등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소득 범위, 공제, 비과세·감면소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 내국법인·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 5)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8) 비영업대금의 이익, 9)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의 세제상의 특징으로는 배당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익신탁의 이익,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 등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 7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그림 II-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세금우대저축(4천만원 한도, 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6천만원, 20세 미만 1,500만원) 이자 등에 대하여는 9% 저율분리과세하고 있다.

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에는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⁴⁾, 4) 인정배당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는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턱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마.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4) 상법상(형식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 되는 경우.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배당.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25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5)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매매업, 6)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단, 사업소득 중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감면이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납세를 위한 사업소득금액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사업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나 재무제표 작성과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금액과는 항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세무조정)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세무조정의 예를 들면,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은 손익계산서상에는 수입으로 처리되나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벌금·과료, 가사관련경비, 업무무관경비, 접대비 필요경비 등은 사업소득금액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가리킨다.⁶⁾ 근로소득금액은 먼저 이상의 소득금액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이나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 국외근로소득, 벽지수당 등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2005년 현재 공제액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여액	공제액
연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4,500만원 초과분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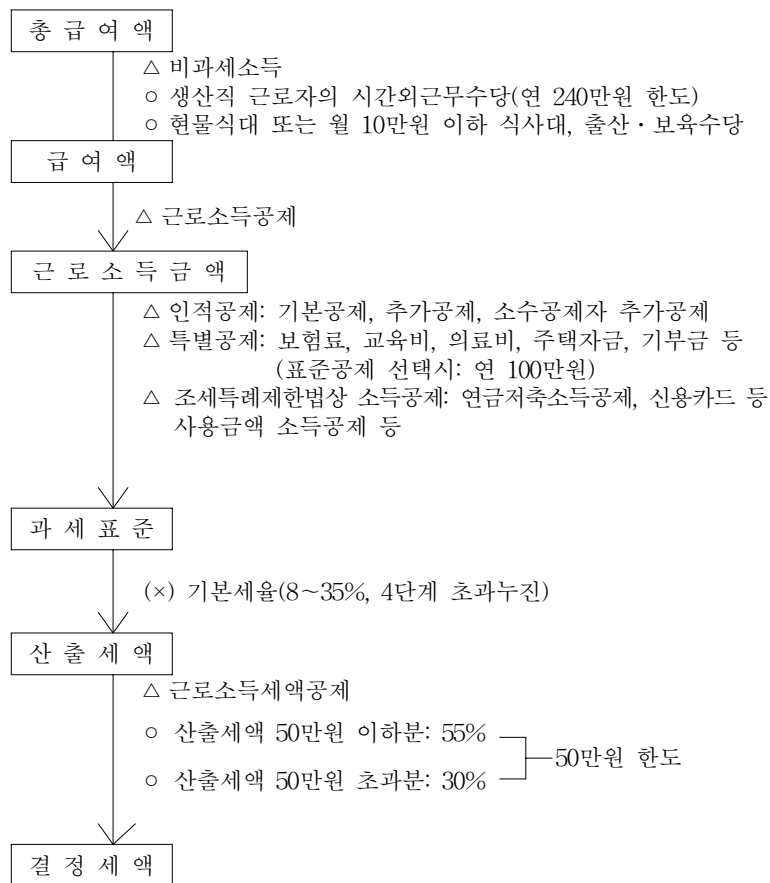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인적공제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항목공제가 그 내용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공

6)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 2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러나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이하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소득으로서 사용한다.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27

제 대신에 표준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연 1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표준공제와 비교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특별공제액이 연 1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되고, 100만원 이하여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표준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에 더하여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그림 II-2] 근로소득세액의 계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 일시재산소득 및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으로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200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이 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금액은 지급받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해지는데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II-2> 연금소득공제액

총 연 금 액	공 제 액
연 250만원까지	전 액 공 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분	430만원+9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아.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1)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3)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

용료로 받는 금품, 4)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5)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6)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령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생존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소득공제제도는 초과누진세율구조와 함께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며,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나 사업소득자의 각종 비용공제와 같이 필요경비 공제적인 것과 인적공제나 특별공제와 같이 필요경비 외에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는 크게 생계비 공제의 성격을 가지는 인적공제와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사회보장 지출액의 공제나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별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와 같은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가 있다. 각 공제에 대한 내용은 <표 II-3>과 같으며, 소득공제액 수준은 <표 II-4>에 제시하였다.

표준공제는 납세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정책적 배려에서 세부담을 덜어주되 낮은 관리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항목별 공제의 합계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항목별 공제에서는 저소득층 납세자보다 고소득층 납세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

총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⁷⁾

<표 II-3> 소득공제 내용

구분	내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6세 이하: 100만원 ○ 부녀자세대주: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100만원, 당해 거주자 포함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연급여액의 3% 초과분(5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치원·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 한도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연 150만원 정도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마련 저축 불입금액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저축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1천만원 한도)
	기부금 특별공제* ○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 자기명의로 지출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결혼·이사·장례비공제*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당 각각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혹은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표준공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는 100만원) -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가능 -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주 : *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

7) 소득공제제도의 변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전영준(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귀속연도	2002		2003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2,175,170	12,172,352	12,605,515	12,579,228
인적공제 계		8,070,376	7,797,099	8,138,760	7,842,905
기본공제		6,806,545	6,806,339	6,744,919	6,744,911
추가공제		1,160,239	911,128	1,268,974	1,002,405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3,592	79,632	124,867	95,589
특별공제		540,709	1,040,960	638,839	1,330,057
표준공제		2,330,131	1,398,055	2,383,719	1,430,214
연금보험료공제		957,930	1,457,349	1,147,531	1,417,02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76,024	478,889	296,666	559,0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각종 소득공제가 행해진 다음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된 후에 세액공제가 행해진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다(<표 II-5> 참조).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배당세액공제이며,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이다(<표 II-6> 참조). 이 가운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과정을 보면, 연간 55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로 공제한다. 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가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표 II-5> 세액공제 내용

구 분	공제대상	세 액 공 제 액
배당세액 공제	총 합 소 득 금 액 에 배 당 소 득 금 액 이 합산된 경우	$\begin{cases} \text{① 배당소득수입금액} \times 19\% \\ \text{② 한도액} = \text{총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배당소득금액}}{\text{총합소득금액}} \end{cases}$ ⇒ ①, ② 중 적은 금액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기장된 총합소득금액(산립소득금액)}}{\text{총합소득 또는 산립소득}} \times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1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한도 : 연간 55만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text{일 급여액} - \text{일 } 80,000\text{원}) \times 8\%] \times 55\%$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 대소득, 사업소득, 산립소득)가 재해 로 인하여 자산총 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text{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 \text{가산금}) \times \text{재해상실비율}$ $\text{※ 재해상실비율} = \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외국납부 세액공제	총합(산립)소득금 액에 국외원천소 득이 합산되어 있 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begin{cases} \text{① 외국납부세액} \\ \text{② 공제한도}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총합소득금액}} \end{c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표 II-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252,827	260,591	440,177	531,537	591,724	674,202	686,905
배당세액공제	145,231	161,633	278,396	286,015	332,351	405,041	475,220
기장세액공제	-	-	27,094	38,353	44,538	44,414	37,209
근로소득세액공제	55,806	53,930	52,633	96,009	73,958	58,715	74,621
외국납부세액공제	3,529	4,643	5,004	7,552	11,440	9,375	12,164
재해손실세액공제	321	432	456	657	1,035	914	84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42,294	33,536	65,368	84,529	123,720	151,941	78,434
기타공제	5,646	6,417	11,226	18,422	4,682	3,802	8,41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차.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사업소득자는 현재의 소득세제하에서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이렇게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⁸⁾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8)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진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5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있다. 즉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포함한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서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4년 귀속소득의 경우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표 II-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2004년 귀속소득)

업종구분	2003년 수입금액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주요경비의 범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입비용의 경우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이때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게 된다.

임차료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의미하여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비용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와 자영업자 규모

가. 배경

최근 경기가 침체되자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영업⁹⁾은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은 실업자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계층에게는 경제활동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하게 된다. 자영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심각한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고용수준을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Folster, 200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대하게 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인 고용수준이 증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Thurik, 1999; Folster, 1998).¹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및 서비스업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4, 2005).

자영업의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개인의 경제활동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의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효과에 관한 기존 논의는 일률적인 소득세 변화와 차별적인 소득세 변화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노동공급 유인효과는 자명한바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에 집중되어 있다. 일률적인 소득세 변화의 효과는 현재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세부담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소득세정책의 변화시 예상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영업부문과 피고용소득에 대한 차별적인 소득세정책 또한 노동공급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업종별로 차별적인 경비율¹¹⁾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의미를 지닐

9) 비임금 노동자인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10) Folster, 2001에서 재인용.

11)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부문의 낮은 소득과악률을 고려하여 피고용 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추가적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과악의 정도에 따라 자영업과 피고용 소득자 상호간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영업 내부적으로도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비 경비율(혹은 소득률¹²⁾)을 달리 적용하여 실질적인 소득세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업종별 경비 비중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과악의 어려움 및 이들의 조정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업종별 노동공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본절에서는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자영업자¹³⁾로의 노동공급 유인들과 함께 고용현황 그리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진국들과의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상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이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와 차별적 조세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나타난 자영업자의 고용 비중 변동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국제비교 및 산업 내 비교 등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이론적 검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실업수준,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개인의 자본축적도, 소

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율을 통해 경비수준을 결정하고 최종 소득수준을 산출하게 된다.

12) 2002년 이전에는 표준소득률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13)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광의의 자영업자를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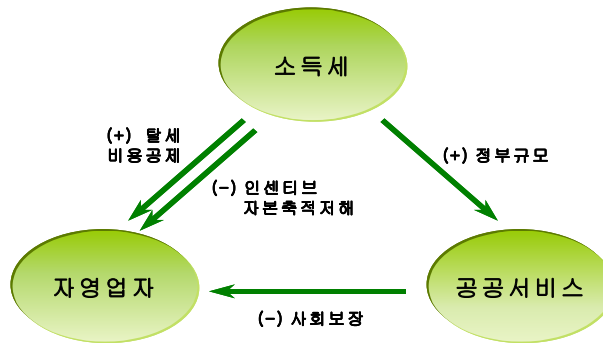
소득세 부담수준, 조세회피 용이성, 위험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 등이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나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인의 과거 경험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자영업자로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혹은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 소득세 부담수준과 자영업자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가 자영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은 다양하다. 우선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증가는 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자영업은 개인목적으로 사업체의 자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어 전반적인 사회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동 부문으로의 노동공급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높은 세부담은 근로인센티브를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화하는 자영업자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본축적이 요구되나 높은 세부담은 개인부문의 저축을 감소시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¹⁴⁾

간접적인 효과로는 높은 소득관련 과세로 인한 정부서비스 증가 효과이다.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는 우선 사회보장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실업 및 노후보장 관련 복지제도가 완비될수록 임금근로자로의 노동이동이 촉진된다. 또한 정부규모의 증가는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담당하는 산업부문을 축소시키거나 임금근로자 시장으로 전환을 촉진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민간자본 비중을 축소시켜 개인의 자본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14) 사회보장 등 복지혜택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e.g. Feldstein 1974, 1975; Kotlikoff, 1995).

[그림 II-3] 소득세와 자영업자 규모의 상관관계



개인의 직업선택 과정에서 작용하는 조세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비교적 단순하다. Boskin(1974)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영업업을 할 것인가 임금근로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미래의 기대소득에서 예상비용을 제외한 일생소득 현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생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이 직면하는 유동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의 소득과 비용관련 변수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Robson and Wren(1999)은 개인의 탈세가능성과 수입수준을 결정하는 노력을 선택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평균세율과 한계세율¹⁵⁾이 자영업자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도출하였다. 일률적인 세율의 증가는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하며 한계세율의 증가는 임금근로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15개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Gentry and Hubbard(2000)는 미국 PSID 자료를 이

15) 그러나 거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한계세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정하기 어려워 평균 생산직 근로자 임금수준의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오차도 있다(Robson and Wren; 1999).

용하여 소득세의 누진도(Convexity of tax system)가 자영업자로의 노동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외 많은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세 이외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이론적 모형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평균세율의 인상은 자영업자 비중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계세율 변화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arker and Robson, 2004). 한편 Robson(1996), Folster(2001)는 평균세부담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나 이들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영향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Robson, 1998; Robson and Wren, 1999).

OECD(2000)는 5개 국가별(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세율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통합자료(Pooled data)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업률의 영향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률의 증가가 임금근로자 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자영업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recession push)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전체적인 수요감소로 자영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prosperity pull)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Long(2001)은 미시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직업선택에서 조세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자영업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크기는 개인의 경험, 자본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개인적 성향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다. 자영업자 현황 및 추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농업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3년 기준 29.47%로 OECD 평균

13.7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이는 멕시코의 31.37% 다음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세제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11.80%와도 좋은 대조를 보인다.

농업부문을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변화는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자연감소중인 농업부문을 제외할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악화된 고용사정으로 비농업 자영업자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이전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인한 자영업 감소효과를 감안할 때 이를 상쇄할 유인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고용 중 비농업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수준 및 소득세 수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지만 이러한 상관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⁶⁾ 1인당 소득수준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규모 증가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반면 소득세 수준은 보다 직접적인 소득세부담과 자영업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비교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인당 소득과 소득세 비중 모두 자영업자 비중을 설명하는 국가 간 상관관계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국가는 2003년 기준 이탈리아, 멕시

16) 통제되지 않는 요인들은 실업률, 개인의 의지, 실업급여 수준 등이 있으나 사회보장 수준은 일정부분 소득수준(혹은 소득세부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별 자영업의지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코, 터키 등으로 국가 간 수렴과정에서 벗어나는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1인당 소득과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OECD 국가 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표 II-8>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 (단위: %)

국 가	1985	1990	1995	2000	2003
Australia	16.37	15.91	15.91	14.48	13.36
Austria	14.94	14.16	14.40	13.12	12.76
Belgium	18.03	18.12	18.81	-	-
Canada	10.35	9.51	10.61	10.66	9.74
Czech Republic	-	-	11.98	15.16	17.26
Denmark	12.41	11.68	139.29	8.73	8.82
Finland	14.87	15.56	15.55	13.70	12.91
France	15.03	13.17	10.80	9.20	8.84
Germany	12.01	10.95	10.71	10.96	11.44
Greece	50.67	47.67	46.11	41.60	-
Hungary	-	-	17.99	15.19	13.46
Iceland	12.50	15.08	19.72	17.97	-
Ireland	23.84	24.87	22.17	18.94	17.48
Italy	29.70	28.67	29.32	28.49	27.53
Japan	25.40	22.32	18.29	16.61	15.14
Korea	45.87	39.45	36.81	36.85	34.95
Luxembourg	11.74	9.37	7.63	7.33	6.78
Mexico	-	31.91	40.90	36.41	37.13
Netherlands	11.58	11.65	12.45	12.04	-
New Zealand	-	19.95	20.97	-	19.32
Norway	12.25	-	9.33	7.39	7.33
Poland	26.52	27.17	29.71	27.39	27.27
Portugal	32.31	29.39	27.91	26.09	26.68
Slovak Republic	-	-	6.53	7.96	9.75
Spain	30.17	25.82	25.18	20.07	18.54
Sweden	7.30	9.19	11.19	10.29	9.64
Switzerland	-	-	12.74	13.18	11.94
Turkey	-	61.04	58.47	51.40	49.36
United Kingdom	13.11	15.10	14.62	12.27	12.67
United States	9.09	8.80	8.52	7.42	7.57
Average	19.83	21.46	24.15	18.25	17.22

자료 : OECD Lab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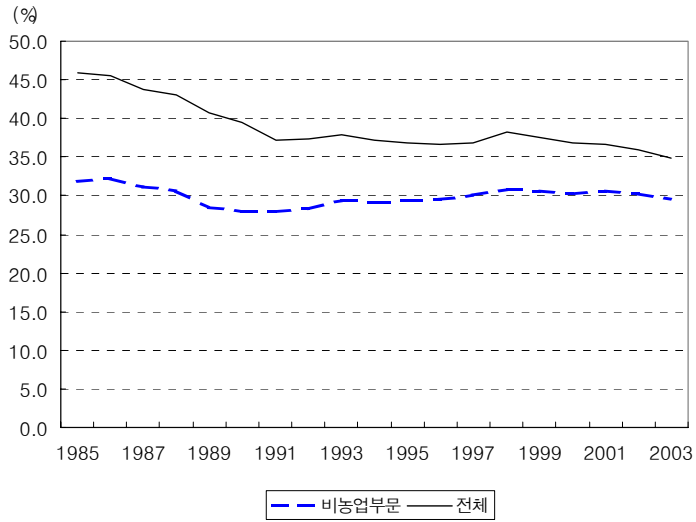
<표 II-9> OECD 국가의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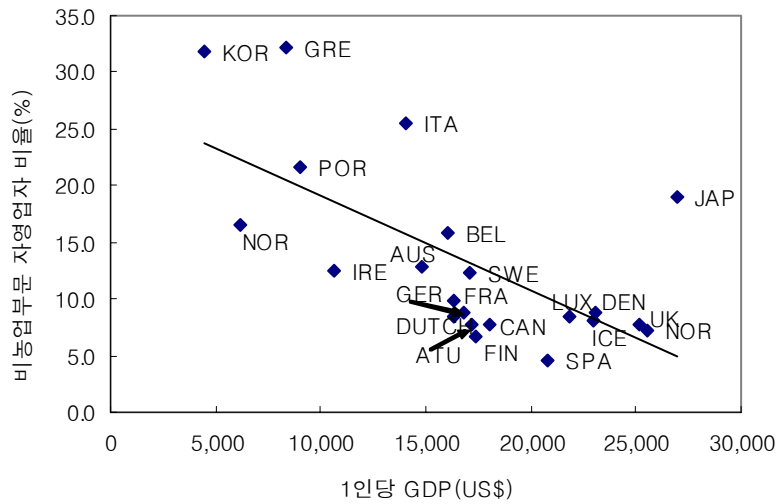
국 가	1985	1990	1995	2000	2003
Australia	12.89	12.95	13.51	12.40	11.95
Austria	7.78	7.86	8.61	8.74	8.87
Belgium	15.87	16.35	17.32	-	-
Canada	7.79	7.55	9.01	9.55	8.88
Czech Republic	-	-	11.92	15.07	17.12
Denmark	8.75	8.55	10.13	7.19	7.43
Finland	6.75	9.51	9.95	9.93	9.41
France	9.82	9.26	7.99	7.10	6.88
Germany	8.77	8.52	9.34	9.96	10.44
Greece	32.26	32.44	33.56	30.42	-
Hungary	-	-	17.56	13.22	12.26
Iceland	8.11	11.33	16.41	14.99	-
Ireland	12.48	13.83	14.00	13.63	13.15
Italy	25.54	25.77	27.07	26.72	25.96
Japan	19.04	16.99	14.09	12.86	11.80
Korea	31.79	27.95	29.36	30.30	29.47
Luxembourg	8.49	7.12	6.35	6.26	5.90
Mexico	-	24.04	32.29	30.28	31.37
Netherlands	8.37	9.10	10.72	10.68	-
New Zealand	0.00	15.14	16.91	-	16.50
Norway	7.29	-	6.18	5.11	5.08
Poland	4.96	9.16	12.22	12.54	12.73
Portugal	16.58	18.17	20.35	18.25	18.35
Slovak Republic	-	-	6.86	8.13	10.23
Spain	21.66	20.43	21.16	17.36	16.34
Sweden	4.52	7.32	9.48	9.04	8.52
Turkey	-	30.97	29.73	27.18	26.22
United Kingdom	12.26	14.23	13.74	11.71	12.15
United States	7.76	7.73	7.39	6.62	6.97
Average	12.48	14.89	15.28	14.27	13.76

자료 : OECD Lab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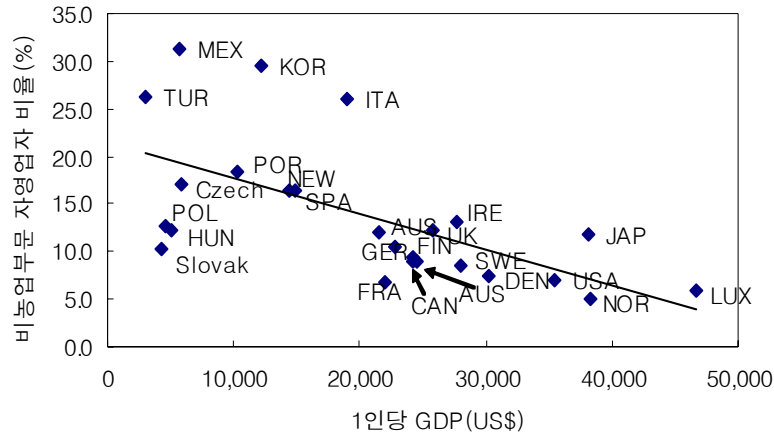
[그림 II-4]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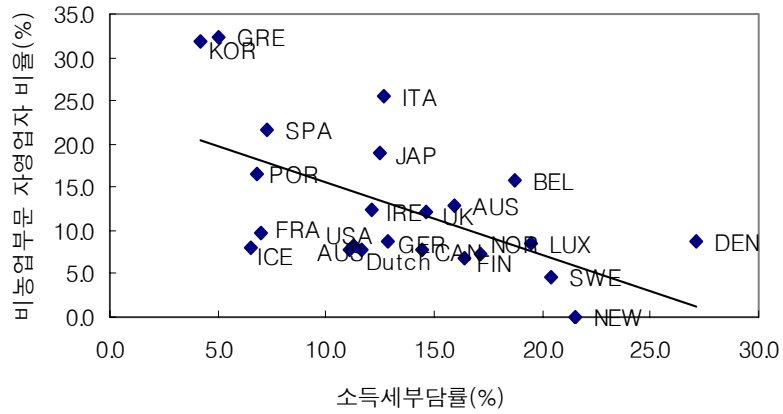
[그림 II-5]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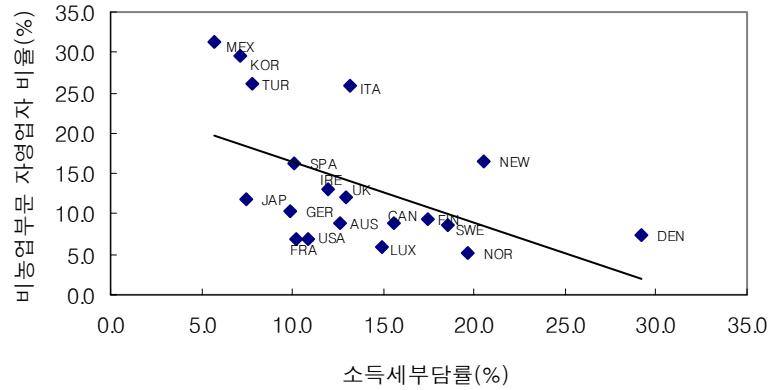
[그림 II-6]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2003년)



[그림 II-7]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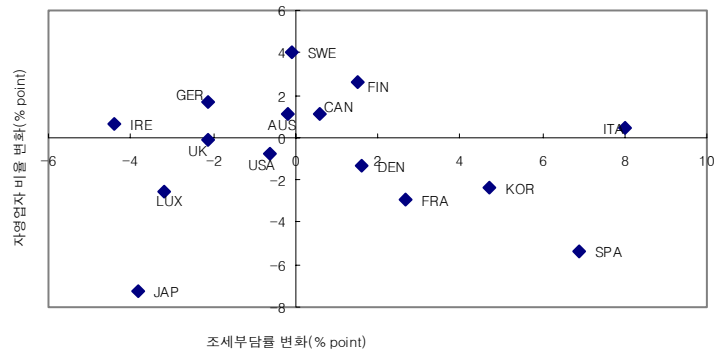
[그림 II-8]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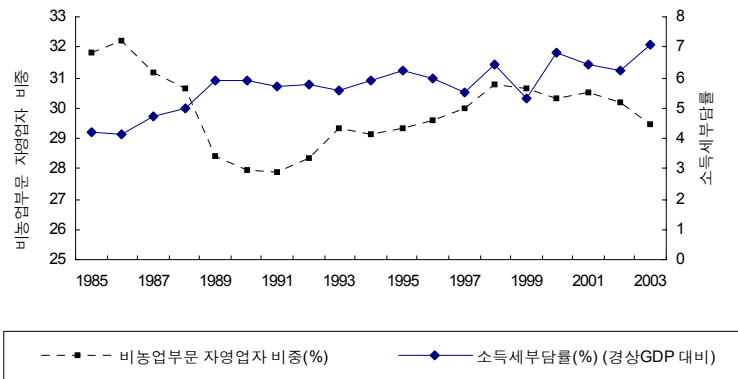
각 국가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 이후 2003년까지 자영업자 비율과 소득세부담률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상당한 국가들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등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핀란드,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석기간중 외환위기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펴본 것이나, 평균소득세율이 자영업자 비율과의 상관관계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OECD(2000) 결과와 다르지 않다. 또한 평균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한계세율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과 기타 변수들이 종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9] 비농업 자영업자 비율변화 및 소득세부담률 변화(1985~2003년)



[그림 II-10] 우리나라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세부담률의 추이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OECD Revenue statistics.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소득세부담이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1985~200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S_t = \beta_0 + \beta_1 S_{t-1} + \beta_2 \ln(PGDP_t) + \beta_3 Tax_t + \epsilon_t$$

여기서 S_t 는 t 시점에서 자영업자 비중이며 $\ln(PGDP_t)$ 는 1인당 GDP, 그리고 Tax_t 는 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의 과거치를 추정식에 도입하였는데 이는 실효세율 차이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귀식에 종속변수의 과거치를 포함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에리항과의 상호연관으로 인한 추정치의 비일치성(inconsistency) 및 편의성(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전 종속변수를 이용한 추정치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2SLS를 추가하였다. 단순회귀분석 및 2SLS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부담에 대해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도 -0.7304로 소득세부담률 1%포인트 증가가 자영업자 비중을 0.73%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세부담의 경우 자본축적의 저해, 탈세가능성 등으로 유도하는 자영업자 감소효과가 탈세유인 증가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증가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에는 계량화되지 못하는 소득축소 및 탈루, 낮은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임금일자리 부족, 그리고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이들 요인의 분석도 동시에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비중을 고려하여 정부부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1인당 소득변수는 유의하게 자영업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동 기간 동안 정부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자영자 사업부문 대체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어느 정

도 높아진 최근에는 비로소 사회복지에의 요구가 증대한 점을 감안할 때, 자영부문과 정부부문과의 대체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남을 짐작케 한다.

<표 II-10> 자영자 비중 추정결과

변 수	OLS	2SLS
St-1	0.6603*** (5.12)	0.5703*** (4.01)
ln(PGDPT)	2.2129** (2.49)	2.3324** (2.80)
income tax	-0.9035** (-2.55)	-0.7304* (-2.07)
constant	-4.6974	-4.1655
Adj_R ²	0.7201	0.6860
F_value	15.58(3, 14)	9.87(3, 13)
prob>F	0.0001	0.0012

주 : *** 1%, ** 5%, *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t-통계량임.

한편 자영업에서 주인과 함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각 국가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외부 근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과약이 어려운 현실에서 외부 일자리의 세후임금률보다 가족운영 자영업 일자리의 임금률이 높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즉 소득과약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세부담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사업규모는 작아지게 되며 동

시에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 1인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어 낮은 소득과 악률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1인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985년 0.28명 수준에서 2003년에는 0.22명 수준으로 낮아져 자영업에 대한 소득과 악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일본(0.36)¹⁷⁾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11명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OECD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변화와 함께 산업부문별 자영업자 분포추이도 소득세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과 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과세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에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구조와 다른 경비율(혹은 소득률)을 적용할 경우 산업 간 노동공급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의 조정은 다양한 개별 사업체의 비용구조 과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기지표 등에 이용하여 업종별 호·불황 여부를 판단하고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비용구조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거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통해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방안은 이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비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17) 일본의 경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가업 승계형 자영업이 많은 사회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1> 비농업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 수

국 가	1985	1990	1995	2000	2003
호 주	0.02	0.05	0.05	0.05	0.02
오스트리아	0.30	0.19	0.20	0.16	0.13
벨 기 에	0.27	0.26	0.25	-	-
캐 나 다	0.04	0.03	0.03	0.02	0.01
체 코	-	-	0.04	0.04	0.04
덴 마 크	0.22	0.19	-	0.09	0.06
핀 란 드	0.04	0.02	-	0.02	-
독 일	-	-	0.07	0.05	0.07
그 리 스	0.19	0.18	0.21	0.18	-
헝 가 리	-	-	0.05	0.04	0.03
아이슬란드	-	-	0.05	0.01	-
아 일 랜 드	0.05	0.05	0.04	0.06	0.05
이 탈 리 아	0.20	0.16	0.17	0.15	0.17
일 본	0.48	0.48	0.42	0.38	0.36
한 국	0.28	0.28	0.26	0.25	0.22
멕시코	-	0.21	0.23	0.19	0.19
네덜란드	-	0.16	0.11	0.06	-
뉴질랜드	-	0.04	0.04	-	0.03
노르웨이	0.13	-	0.05	0.06	-
폴란드	-	-	0.08	0.06	0.06
포르투갈	-	0.09	0.06	0.07	0.05
슬로바키아	-	-	0.02	0.02	0.05
스페인	0.22	0.21	0.14	0.10	0.08
스웨덴	0.01	0.01	0.02	0.02	0.02
터키	-	0.17	0.18	0.17	0.16
영국	0.16	0.15	0.13	0.08	0.05
미국	0.04	0.03	0.01	0.01	0.01
평균	0.23	0.18	0.17	0.12	0.11

자료 : OECD Labor statistics.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약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의 경우 고용 근로자 중 가족에 대한 과다임금 지출을 통한 조세회피, 즉 소득이동(Income shifting)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재¹⁸⁾ 운용중인 단

순경비율(기준경비율)제도는 비용구조 파악의 한계로 인해 업종별 자영업자에게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산업별 자영업자의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8.4%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25.83%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금융·통신·창고업, 부동산·임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2>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변화추이

(단위: %)

업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업	28.72	27.15	25.87	24.48	23.48	22.51
수산업	0.59	0.60	0.62	0.61	0.53	0.61
광업	0.03	0.01	0.03	0.03	0.04	0.05
제조업	8.55	9.04	9.35	9.25	9.01	8.43
전기·가스 등	0.00	0.00	0.00	0.00	0.00	0.01
건설	4.49	4.05	4.52	4.73	5.17	5.97
도소매업	27.93	28.40	26.65	26.78	26.23	25.83
호텔·식당업	12.05	12.12	11.89	11.51	11.68	12.38
교통·통신·창고	4.23	4.54	4.89	5.33	6.01	6.32
금융중개	0.46	0.56	0.68	0.76	0.75	0.50
부동산, 임대, 사업	3.26	3.67	3.71	4.02	4.28	4.4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00	0.03	0.00	0.00	0.00	0.01
교육	3.09	3.05	3.17	3.27	3.08	3.70
보건	0.75	0.80	0.73	0.71	0.83	0.57
개인서비스	5.58	5.60	7.45	7.92	8.18	8.03
가사서비스	0.29	0.37	0.45	0.62	0.74	0.69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주: 업종별 세부 단순경비율의 평균치임.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 18) 기존의 표준소득률, 즉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2002년 소득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즉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53

산업부문별 세부담을 결정하는 소득률의 변화를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800~900여종의 업종별 소득률을 단순평균함으로 인해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를 단순(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한 2002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호텔·식당업의 소득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보건업의 경우 1%포인트 이상 소득이 상향조정되었다.

<표 II-13> 산업별 소득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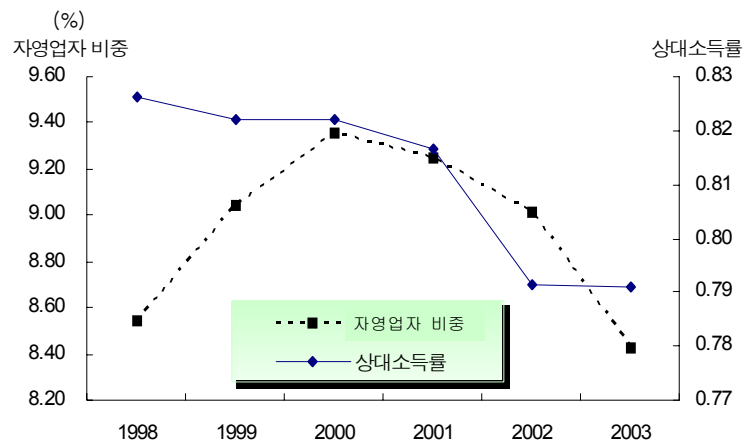
업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업	9.709	9.645	9.600	9.600	9.600	9.482
수산업	5.527	5.382	5.382	5.282	5.282	5.282
광업	7.124	7.106	7.106	7.106	7.106	7.106
제조업	9.500	9.453	9.455	9.390	9.099	9.097
전기·가스 등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건설	10.950	10.839	10.494	10.450	10.450	10.439
도소매업	9.328	9.318	9.333	9.315	8.810	8.783
호텔·식당업	26.463	26.896	27.058	27.167	25.419	25.410
교통·통신·창고	18.404	18.396	18.370	18.317	18.317	18.233
금융중개	28.125	28.246	28.246	28.246	28.246	28.350
부동산, 임대, 사업	32.398	32.333	32.182	32.262	32.625	32.53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n.a.	n.a.	n.a.	n.a.	n.a.	n.a.
교육	23.813	23.925	23.638	24.213	24.213	23.963
보건	28.146	28.146	29.358	29.929	31.230	31.830
개인서비스	29.331	29.292	29.431	29.744	29.176	29.021
가사서비스	26.300	26.300	26.300	26.300	26.300	26.300
기타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주 : 1. 2002년 이후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소득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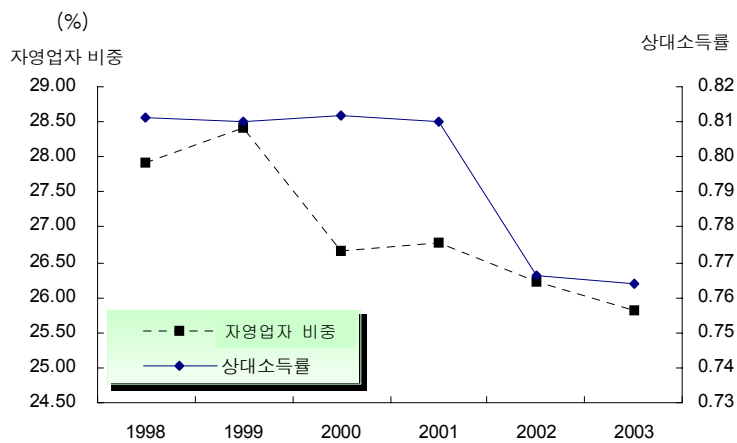
2. 각 세분류 업종별 소득률의 산술평균치임.

자료 :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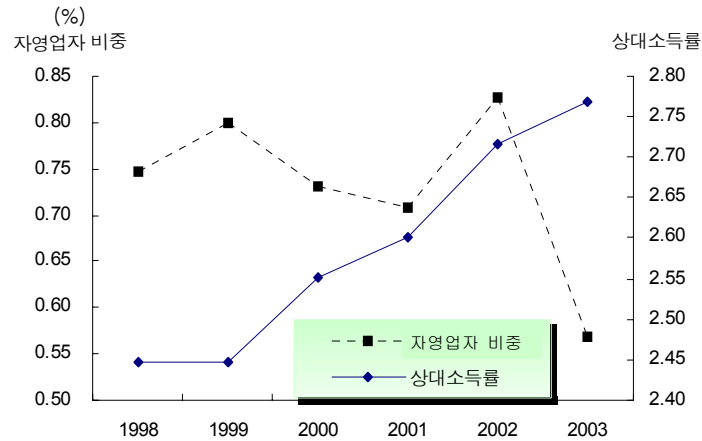
[그림 II-11]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그림 II-12]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그림 II-13] 보건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라. 소결

최근 자영업부문의 성장 및 고용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조세지원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요인분석은 OECD 국가 간 분석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그 행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실효소득세부담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회귀 분석 및 2SLS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부담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소득세부담의 경우 자본축적의 저해, 탈세가능성 등을 유도하는 자영업자 감소효과가 탈세유인 증가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증가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일자리가 많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하는바 향후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행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단순경비율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소득세구조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과거추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동 부문으로부터 자영업자 유출을 억제하였으며 보건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정책은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단순경비율 등의 조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방식보다는 산업별 비용구조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소득유형별 과세차등 사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세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세제를 적용하고 만약 사업소득의

소득과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데 정책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유형 간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담 차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과약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면 사업소득의 과약정도에 따라 소득세제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차등세제는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사업소득의 과약정도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차등적 소득세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적용세율의 차이보다는 근로소득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의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차등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소득유형별로 공제제도를 달리 운영함으로써 소득세부담의 차등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파트너십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동업자 각각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프랑스 소득세는 세대별로 종합과세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가족제수제(Income splitting system: 家族除數制)라는 독특한 소득세액 및 납부세액 산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제수제(세대별 N분 N승 방식)는 가족의 과세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이것을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가족제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가족제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합산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부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녀를 합산대상가족으로 하는데 자녀가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전이라도 결

혼한 때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1세 미만(재학중인 자는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군에 복무하는 자녀(연령과 무관)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부부의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되, 자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즉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이 강제되지 않으며, 자녀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자녀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어 가족제수 산정시 제외되게 된다.

‘세대 구성원별 가중치 합’을 산정하는 가족제수제를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에는 1p, 부부는 2p, 부부 및 1인 자녀는 2.5p, 부부 및 2인 자녀는 3p, 부부 및 3인 자녀 4p, 부모는 각각 0.5p로 한다.¹⁹⁾ 단, 납세의무자가 홀아비 또는 과부인 경우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산한 가족제수로 합산과세 소득을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제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가족제수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구증가 장려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2자녀까지 가중치는 균일하게 0.5로, 자녀 1인당 세부담 감소액은 두 번째 자녀 이하에서 체감하여 인구정책으로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과세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봉급, 급여(Traitements, Salaires: 이하 TS라고 함), 연금 및 종신연금(rentes viagères)
-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 이하 RF라고 함)
- 유동자산소득(Revenus de Capitaux Mobiliers: 이하 RCM이라고 함)
- 특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Plus Value: 이하 PV라고 함)

19) 본인, 배우자는 각 1p, 자녀 2인까지는 각 0.5p, 세 번째 자녀부터는 각 1p로 계산.

-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이하 BNC라고 함)
- 산업 또는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ou Commerciaux: 이하 BIC라고 함)
- 농업소득(Bénéfices Agricoles: 이하 BA라고 함)
- 특정 법인 이사의 보수(CGI 제62조)

<표 II-15>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노동과 관련된 소득	자본소득	혼합소득(노동+자본)
TS 및 연금	RCM, RF, PV	BNC, BIC, BA, 이사의 보수

소득세율구조는 소득수준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일수록 가족 수에 따른 조세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II-16> 소득수준별 적용세율 및 산출세액(2004년 귀속소득)

소득(I/N)구간(유로)	적용세율(%)	산출세액(유로)
4,434	0	T=0
4,434~8,524	6.83	$T=(I \times 0.0683) - (296.01 \times N)$
8,524~15,004	19.14	$T=(I \times 0.1914) - (1,345.32 \times N)$
15,004~24,294	28.26	$T=(I \times 0.2861) - (2,713.68 \times N)$
24,294~39,529	37.38	$T=(I \times 0.3738) - (4,929.29 \times N)$
39,529~48,747	42.62	$T=(I \times 0.4262) - (7,000.61 \times N)$
48,747 초과	48.09	$T=(I \times 0.4809) - (9,667.07 \times N)$

주 : I : 총가구소득, N: 가족제수.

프랑스 소득세제에서의 공제는 다음 2단계의 공제를 거쳐 純종합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우선 1단계는 결손금 공제인데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revenu brut)에서 각 소득에 해당되는 비용(charges)을 공제하여 각 소득별 순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2단계는 비용공제로

서 각 소득별 순소득을 합한 總종합소득(revenu brut global)에서 직전연도의 결손금과 법률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하면 純종합소득이 산출²⁰⁾되게 된다.

결손금공제의 경우 직전연도에 발생한 세대별 구성원의 결손금은 같은 성질의 소득 및 같은 해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과 상계된다.²¹⁾ 결손금공제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단계 공제유형은 종합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①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14% 공제
- ② 산업 및 상업소득의 공제
 - ㉠ 필요경비공제 : 유지관리비(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는 제외), 보험료, 인건비(기업주의 인건비는 제외), 법률에 규정된 경우(예를 들면 소득세)를 제외한 조세 공과금 등
 - ㉡ 감가상각비 공제
 - ㉢ 이월결손금 공제 : 산업 및 상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그러나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공제가능
- ③ 근로소득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10%(1만 2,862유로 한도)를 필요경비항목으로 공제(실제 경비정산을 선택할 수도 있음)
 - ㉡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의 은폐가 상대

20) 각 소득별 순소득 산출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해당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된 재화, 용역 및 자산 등의 구입비용 등이고, 순종합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비용은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비용을 의미.

21) CGI 제156조 제1항

적으로 용이한 자영사업자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純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추가로 20%(2만 3,580유로 한도) 공제

④ 법인이사소득

‘봉급 및 급여소득(traitements et salaires)’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20%의 공제가 허용

⑤ 비상업소득의 비용공제

자유직업소득(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중개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2만 7천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기업의 적용 대상이 됨. 소규모기업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37%를 비용으로 공제

⑥ 유동자산소득의 Avoir Fiscal 세액공제

Avoir Fiscal 세액공제란 법인세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그 배당금액의 50%를 더하여 산정한 소득세액에서 배당금액의 50%만큼을 공제

⑦ 부동산 양도소득

㉠ 기초공제 : 먼저 기초공제액으로서 930유로가 공제

㉡ 추가공제 : 두 번째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첫 번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배우자 공제액 3,070유로, 독신자, 과부, 홀아비의 경우 4,615유로, 부양가족의 경우 각각 1,530유로의 추가공제가 허용

2단계에서의 비용공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해당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부양료 : 프랑스 민법 제205조, 제211조 및 367조에 의해 노약자 또는 유약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양료는 지급자에

게는 비용으로 공제되고 지급받는 자에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노인 생활보조비 공제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대상이 해당 사업연도중 75세 이상이고, 납세의무자와 같이 동거하며, 연간 6,560유로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공제

㉡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손실공제

납세의무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증자에 참여한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법인의 자본손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²²⁾

㉢ 영화진흥기금 출연금

영화진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25% 및 연간 1만 8,460유로를 한도로 비용공제가 허용

㉣ 특별공제

- 납세의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소득금액이 9,52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1,540유로를, 소득금액이 9,520유로부터 1만 5,400유로인 경우에는 800유로를 공제
- 만일 납세의무자가 결혼하여 배우자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도액은 2배로 증가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자(1998년 1월 1일 이전의 대출에 한함), 주택의 유지 및 보수비용, 개인보험료, 자선기부금, 가정내 고용인 비용, 학비, 자녀보육비를 들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에 대하여 그 5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2) CGI 제163 octodecies조 A항

따라서 프랑스 세제에서 근로소득과 타 소득과의 차등부분은 근로소득에 대해 허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실액공제와 선택가능)인 소득의 10%와 자영업자와의 소득과약차이를 반영한 추가공제(소득의 18%)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에는 소득한도를 적용하여 고소득자가 과도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나. 일본²³⁾

일본 세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구조는 샤우프 권고에 근거하고 있다. 샤우프 세제는 1949년 미국의 칼 샤우프(Carl S.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에 의해 작성되어 일본세제의 전면적인 개혁안으로서 발표된 것이다. 이 포괄적 세제개혁안은 1949, 1950년도의 세제개정시 많은 부분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일본세제의 기본이 되고 있다.

샤우프 세제의 이념은 공정·중립·간소라는 3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 안정적인 세제를 확립하고, 직접세(특히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득세에 관해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선택과세 폐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득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율인하 단행이 의도되었다.

샤우프 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소득세제의 특징으로는 1)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기준을 정하는 종합과세 원칙, 2)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인적사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면제하는 과세 최저한의 설정, 3) 산정된 과세소득에 관해 초과누진과세라 불리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결정하는 누진소득체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세소득을 몇 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고액 소득계층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23) 전병목·원중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2003)에서 발췌.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65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소득을 발생원인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10종류의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이다.

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보면 우선 이상의 10종류별 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구한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는 종료한다. 또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산림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초공제 등 15종류의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제는 인적공제와 금전적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에는 기초인적공제와 특별인적공제 2종류가 있다. 독신의 경우는 본인에 대한 공제인 기초공제(현재 38만엔)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 등이 적용된다.

급여소득, 퇴직소득에 관해서는 필요경비를 대신하여 특별공제를 설치하고 있다. 즉,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공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라고 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정해져 있다. 급여소득공제의 경우 근무에 따른 표준적인 경비를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 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의 장기성이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금전적 공제로서는 사회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다. 또한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소득에서 일정비율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이상의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다.

한편, 잡소득 중 공적연금에 관한 것으로는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한 액인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이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양도자산 취득가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에는 특별공제 등 소득계산 특례도 있다. 또한, 유가증권양도익에 대해서도 특별한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의 사람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소득을 최저과세점(면세점)이라고 한다. 이 면세점은 기초공제 등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이 변동하는데 현재 부부와 자녀 2명의 표준적인 급여생활자 세대인 경우는 384만 2천엔이다.

<표 II-17> 소득세 최저과세점(면세점) 내역
(급여생활자의 경우, 2002년)

구분	독신	부부	부부+ 자녀1	부부+자녀2		
				특정부양1	특정부양 무	
면세점	1,144천엔	2,200천엔	2,833천엔	3,843천엔	3,466천엔	
내역	급여소득공제	650	840	1,030	1,308	1,220
	기초공제	380	380	380	380	380
	배우자공제	-	380	380	380	380
	배우자특별공제	-	380	380	380	380
	부양공제	-	-	380	380	760
	특정부양공제	-	-	-	630	-
	사회보험료공제	114	220	283	384	346

주 : 부부와 자녀 1인인 경우는 16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부부와 자녀 2인 가운데 특정부양1인 경우는 16세 미만 자녀가 1인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특정부양 무의 경우는 16세 미만 자녀가 2인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 稻垣光隆 編(2002), 『圖說 日本の税制』.

II. 소득세 과세제도 및 직업선택 67

소득을 그 원천 내지는 성질에 따라 10종류로 분류하는 이유는 소득이 그 성질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담세력이 다른 것을 고려한 계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예컨대 유족이 받게 되는 급부금이나 연금, 급여생활자가 받는 출장비 등과 같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도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나누어 인적공제와 잡손실공제나 사회보험료공제 등 기타 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도 그 취지에 따라 기초·배우자·부양공제 등 소위 기초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장애인·연소자 공제 등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활상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공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배우자공제 및 부양공제는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으며 이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가 있다. 부양공제에는 특정부양공제, 노인부양공제 등 연령에 따른 다양한 가산·할증공제가 인정된다.

장애인·연소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특별)장애인공제, 노년자공제, 과부(홀아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 등이 있다. 이들 공제는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노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나, (특별)장애인공제에 관해서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노년자·과부(홀아비)·근로학생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등 일정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며, 과부공제에 대해서는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액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과세소득 산출 단계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에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배당공제 및 일본 소득세와 외국 소득세의 이중부담 조정을 위한 외국세액공제라고 하는 두 개의 세액공제 규정이 정해져 있다.

배당공제는 법인세에는 선불소득세의 요소가 있다고 해석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제를 배제한다는 요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금액의 10%(과세총소득금액 등이 1천만엔을 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가운데 과세총소득금액에서 1천만엔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에 관해서는 5%)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세액공제는 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그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소득세에 상당하는 외국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소득에 대해 다시 일본의 소득세가 부과되면 국제 간에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소득세액 가운데 일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다.

기타 조세특별조치법으로 주택차입금 등을 지니는 경우의 세액공제나 시험연구비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가 있다.

급여소득에 관한 소득세액계산의 개요를 설명하면, 우선 급여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한 급여소득금액이 계산되면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이 결정된다.

급여소득공제는 1) 급여소득자가 근무 내지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표준적으로 공제하는 요소와, 2) 급여소득의 특이성으로 인해 다른 소득과의 부담조정이라는 요소가 있다.

급여수입이 500만엔인 경우의 급여소득공제액은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154만엔이 되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아도 2001년 예산기준으로 급여소득공제액이 급여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였다.

한편, 급여소득자가 통근비, 전근에 따른 비용 등 특정한 항목에 지출을 한 경우 그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소득금액 계산상 급여소득공제액 이외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특례가 1988년 12월의 세제개혁 당시 도입되었다.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채용되어 급여 등이 지불될 때 그 지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정부에 납부된다. 더욱이 그해의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그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정규 연두세와 급여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을 대비하여 과부족액 정산(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한다)이 행해져, 급여소득자가 신고납세를 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표 II-18> 급여소득공제제도의 개요

급여 수입	공 제 율
	(최저 65만엔)
180만엔 이하 부분	40%
360만엔 이하 부분	30%
660만엔 이하 부분	20%
1,000만엔 이하 부분	10%
1,000만엔 초과 부분	5%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4.

소득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내에 가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1년)이 종료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에 관한 원칙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불할 때 일정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가 성립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소득에 관해 그 소득발생단계에서 그 지불원천으로 소득지불을 한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징수하여, 그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로 징세확실성과 납세자의 번잡한 납세절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급여, 보수, 요금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그 연도분의 소득세에 관해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단, 급여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말조정」 제도가 있어, 그해 마지막으로 받는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되어 있는 이자소득이나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만으로 최종적으로 납세액이 확정되므로 달리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일본세계에서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과약률 차이를 우리나라와 같이 급여소득공제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제도와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한도소득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Ⅲ.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1. 배경

노동공급 구조에서 임금근로자(피용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창의성 및 유연성을 근거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용증대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공급구조에 미치는 소득세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으로 현재의 결과보다 사회적인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차등화에 대한 논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위험회피적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자영소득자로의 노동공급은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즉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위험 중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동 부문으로의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자영업부문(혹은 비법인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자영업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들의 선호도이다.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는 비금전적인 것으로 비록 개인의 경우 비금전적 선호를 포함한 자신의 효용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다 부가가

치가 높은 부문을 포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영업에 대한 비금전적 선호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적정수준보다 많은 노동공급이 자영업부문에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제시된 두 가지 왜곡요인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직업선택 모형에서 사회효용함수를 개인적 사회효용함수로 가정하게 되면 더 이상 왜곡요인이 아닐 수 있다. 개인적 목표가 사회적 효용함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소득이 불확실할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Kanbur, 1981).

동 부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대수익과 위험(yield versus risk)”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한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continuous choice variables)를 기준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모형이기 때문에 직업선택 모형에서와 같이 한계적 변화를 줄 수 없는 변수(discrete choice variables)에는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선택 모형과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차등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Parker(2001)의 모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 및 소득세 환경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과세 차등화방안을 살펴본다.

2. 이론모형

분석을 위한 이론모형은 영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Parker(2001)를 따라 구성한다. 이론경제는 하나의 복합재화가 자영업자와 고용주들에 의해 생산되며 가격은 1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근로하며 고용주는 근로자들을 고용한다. 모든 개인은 1단위의 노동을 비탄력적으로 공급하며 경제 내에 실업

은 없다. 따라서 개인들은 임금근로자가 될 것인지 자영업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며 총노동공급량은 1로 표준화한다.

각 개인들은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며 세후소득에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 $U(\cdot)$ 를 가진다. 효용함수는 오목(concave)하며 $U'(0) \leq 0$ 을 만족한다. 또한 자영업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추가적인 효용(x)으로 고려하고 동 변수는 개인들 사이에서 확률밀도함수 $g(x)$ 로 분포하며 누적확률밀도함수는 $G(x)$ 를 가정하였다. 이때 추가적인 효용(x)은 개인이 자영업자를 선택하였을 때 존재하며 양(+)의 효과를 갖는다.

근로소득자들은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며 생산함수는 규모불변(CRS)이다. 생산물은 모두 소비되며 따라서 이윤에 대한 과세 및 분배에 대한 논의는 필요치 않다(Christiansen, 1988).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n)이며 생산함수 $f(n)$ 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생산함수는 강오목함수(Strictly concave)로 $f_n > 0$, $f_{nn} < 0$, $f_n(0) = \infty$, 그리고 $f_n(1) = 0$ 를 만족한다. 임금근로자(피용자)들은 자신의 한계생산물 가치만큼 임금으로 지불받는다. 즉, $w(n) = f_n(n)$.

자영업자들은 불확실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소득 y 를 획득하며 이는 확률밀도함수 $j(y)$: $y \in [0, \infty)$ 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알려져 있다. 기대수입은 $E[y] = h_{1-n}(1-n)$ 으로 나타나며 이는 $y(1-n)$ 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각 직업유형별 평균수입이 투입 노동력 규모에 의존하므로 생산함수 가정에 의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우선 모형에서는 비례세($\tau \geq 0$)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는데 이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 현실과도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자영

업으로의 진입에 제한은 없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선호(x)를 가진 개인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 두 직업 사이에 무차별하게 된다.

$$U([1-\tau]w) = EU([1-\tau]y) + x \quad (\text{III-1})$$

위 식을 만족하는 자영업 선호정도를 $x^*(\tau)$ 라 한다. 만약 개인의 자영업 선호도가 $x < x^*(\tau)$ 를 만족하면 근로소득자가 될 것이며 자영업에 대한 강한 선호도, 즉 $x > x^*(\tau)$ 를 보이면 자영업에 종사할 것이다. 균형수준의 자영업 선호도를 반영한 노동공급은 $n(\tau) = G(x^*(\tau))$ 로 나타나며 이를 위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U([1-\tau]f_n(G(x^*(\tau)))) = EU([1-\tau]y(1-G(x^*(\tau)))) + x^*(\tau) \quad (\text{III-2})$$

위 식을 만족하는 단일 해가 항상 존재한다(Parker, 2001). 직업 간 소득세의 차별이 없는 경제에서 정부목표로 이용될 수 있는 효율성지표는 다음과 같이 두 소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²⁴⁾

$$\phi(\tau) := [1-n(\tau)]y(1-n(\tau)) + n(\tau)w(n(\tau)) \quad (\text{III-3})$$

이제 정부가 직업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살펴보자. 세수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직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율(t) 부과와 다른 직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s)을 동시에 고려한다. 추가 세율과 보조율에 대한 부호에 제약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직업에 따른 추가세율 부과 혹은 보조는 의미가 없다. 본 모형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세율을 부과하고 자영업자에게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직업선택 간 무차별 조건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24) 세액의 경우 비례세가 적용되므로 소득의 합에 비례한다.

$$U([1 - \tau - t]w) = EU([1 - \tau + s]y + x) \quad (\text{III-4})$$

subject to

$$tnw = s[1 - n]E(y) \quad (\text{III-5})$$

제약조건은 세수중립성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 선호도는 $x^*(\tau, t)$ 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식에 대한 미분을 통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frac{ds}{dt} &= \frac{n}{1-n} \frac{w}{E(y)} + t \frac{d}{dt} \left[\frac{mw}{[1-n]E(y)} \right] \\ \frac{dx^*(\tau, t)}{dt} &= \frac{wU_w + E(yU_y)ds/dt}{\{[1-\tau-t]U_w f_{nm} + [1-\tau+s]E(U_y)h_{nm}\}g(x^*) - 1} \end{aligned} \quad (\text{III-6})$$

기본모형($t=s=0$)에서 직업별 차등과세 정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left. \frac{ds}{dt} \right|_{t=s=0} = \frac{n}{1-n} \frac{w}{E(y)} > 0 \quad (\text{III-7})$$

$$\left. \frac{dx^*(\tau, t)}{dt} \right|_{t=s=0} = \frac{wU_w + [nwE(yU_y)/[1-n]E(y)]}{g(x^*)[1-\tau][U_w f_{nm} + E(U_y)h_{nm}] - 1} < 0 \quad (\text{III-8})$$

식 (III-8)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양(+의 차등과세를 적용하면 한계 노동자가 두 직업 사이에 무차별할 수 있도록 자영업에 대한 한계 선호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직업 간 차별과세를 허용할 경우 효율성은 소득세율(τ)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가세율(t)의 조건부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hi(\tau, t) := [1 - n(\tau, t)]y(1 - n(\tau, t)) + n(\tau, t)w(n(\tau, t)) \quad (\text{III-9})$$

직업 간 차별과세로 인한 효율성 개선정도는 부가세율(t)의 부과로 나타날 수 있는 총소득의 증가로 측정할 수 있다.

$$EG = \frac{\Phi(\tau, t) - \Phi(\tau)}{\Phi(\tau)} \quad (\text{III-10})$$

효율성(식 (III-9) 혹은 식 (III-10))을 극대화하는 t에 대한 일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y(1 - n(\tau, t)) - n(\tau, t)f_{nn} = w(n(\tau, t)) - [1 - n(\tau, t)]h_{1-n1-n} \quad (\text{III-11})$$

일계조건에서 도출되는 임금근로직으로의 최적 노동공급량은 $n^* = n^*(\tau, t)$ 이다. 이 결과와 식 (III-4)의 최적 결과 $x^*(\tau, t)$ 를 이용하여 최적 차등부과율 $t^* = x^{*-1}(G^{-1}(n^*))$ 를 구할 수 있다. 최적보조율 s^* 도 세수중립적이란 제약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양의 값 t^* 를 가정한다면 식 (III-11)의 좌변은 자영업으로의 단위노동력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임금근로부문의 평균임금 증가영향의 합이다. 우변은 임금근로부문의 단위노동력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자영업부문의 평균소득 증가영향의 합이다.

한편 t^* 의 부호 또한 앞서 언급한 위험 감수요인과 개인의 비금전적 자영업 선호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존재는 개인들의 자영업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여 적정수준보다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주며 개인의 자영업 선호도는 적정수준보다 자영업으로의 노동이동을 높게 형성하게 해 주어 두 가지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t^* 의 부호가 결정되게 된다.

3. 모의실험

제시된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효용함수, 생산함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U[m] = \begin{cases} \frac{m^{1-\gamma}}{1-\gamma} & 0 < \gamma < 1 \\ \ln m & \gamma = 1 \end{cases} \quad (\text{Ⅲ-12})$$

$$f(n) = An^\alpha \quad A > 0, 0 < \alpha < 1 \quad (\text{Ⅲ-13})$$

$$h(1-n) = B(1-n)^\beta \quad B > 0, 0 < \beta < 1 \quad (\text{Ⅲ-14})$$

$$j(y) = \frac{y^{p-1} \exp(-y/q)}{q^p \Gamma(p)} \quad (\text{Ⅲ-15})$$

$$G(x) = 1 - \exp(-\lambda x) \quad \lambda > 0 \quad (\text{Ⅲ-16})$$

여기서 $\Gamma(p) = (p-1)!$ 로 오일러 감마함수이다.

식 (Ⅲ-12)는 효용함수로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을 가정하였으며 $\gamma > 0$ 는 위험기피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값이 커질수록 더욱 위험기피적임을 나타낸다. 일정수준 이내에서 위험기피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수준의 위험기피도에 따른 모형결과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식 (Ⅲ-13)과 식 (Ⅲ-14)는 각 직업별 생산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탄성치는 각각 α, β 이다. 식 (Ⅲ-15)

는 자영업자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감마분포이며 p, q 는 양의 파라미터이다. 식 (III-16)은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결정하는 변수 x 의 누적확률분포로 개인의 선호수준이 높아질수록 누적확률 증가폭이 감소함을 음의 지수함수형태로 표현한다.

사회적 효율성지표를 최대화하는 조건 식 (III-11)에 제시된 생산 함수 등을 대입하면 $n = n^*$ 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B\beta^2(1-n)^{\beta-1} - A\alpha^2 n^{\alpha-1} = 0 \quad (\text{III-17})$$

만약 $\gamma < 1$ 일 경우 식 (III-4)를 이용할 경우 최적차등세율 t^* 는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한다.

$$\begin{aligned} & [[1 - \tau - t^*]A\alpha n^{*\alpha-1}]^{1-\gamma} = \frac{\gamma-1}{\lambda} \ln(1-n^*) \\ & + \left\{ \frac{B\beta[1-n^*]^{\beta-1}}{p} \left[1 - \tau + \frac{t^*A\alpha n^{*\alpha}}{B\beta[1-n^*]^\beta} \right] \right\}^{1-\gamma} \times \frac{\Gamma(p+1-\gamma)}{\Gamma(p)} \end{aligned} \quad (\text{III-18})$$

여기서 λ 는 근로자 노동공급함수 식 (III-16)을 이용하여 도출될 수 있다. 즉

$$\hat{\lambda} = -[x^*(\tau)]^{-1} \ln(1-n(\tau)), \text{ where } n(\tau) = 0.7044$$

다시 x^* 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x^*(\tau) &= U[(1-\tau)w] - EU[(1-\tau)y \mid \{Ey(\tau) = pq\}] \\ &= \begin{cases} \frac{[1-\tau]^{1-\gamma}}{1-\gamma} \left[1 - q^{1-\gamma} \frac{\Gamma(p+1-\gamma)}{\Gamma(p)} \right] & 0 < \gamma < 1 \\ -\ln(pq) + \sum_{k=1}^{\infty} \left[\frac{1}{p+k} - \ln \left(1 + \frac{1}{p+k} \right) \right] & \gamma = 1 \end{cases} \end{aligned}$$

$\gamma = 1$ 일 경우 t^* 는 다음과 같은 closed form 결과를 갖는다.

$$t^* = [1 - \tau] \frac{1 - \exp(-\psi(p)) B\beta [1 - n^*]^{\beta - 1 - 1/\lambda} / A\alpha n^{*\alpha - 1}}{1 + \exp(-\psi(p)) n^* / [1 - n^*]^{1 + 1/\lambda}} \quad (\text{III-19})$$

여기서

$$\begin{aligned} \psi(p) &= \frac{d}{dp} \ln \Gamma(p) \\ &= \sum_{k=0}^{\infty} \left[\frac{1}{p+k} - \ln \left(1 + \frac{1}{p+k} \right) \right] \end{aligned}$$

도출된 n^* 와 t^* 를 이용하여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s^* = \frac{t^* A\alpha n^{*\alpha}}{B\beta [1 - n^*]^{\beta}} \quad (\text{III-20})$$

이상의 결과식에 우리나라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대입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파라미터의 추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생산함수와 자영업자 소득분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분포는 2004년 가계조사 원자료(1,455개)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감마분포를 이용하여 MLE로 추정한 결과 파라미터 $p=0.8752$, $q=1.1543$ 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용자 생산함수의 추정은 1980~2000년 기간의 피용자 보수, 피용자수, 자본²⁵⁾을 이용하여 콥더글러스함수로 추정하였으며 규모에 대한 불변성은 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

25) 자료는 피용자 보수의 경우 국민계정, 피용자 수는 OECD database, 그리고 자본량은 표학길(2003)의 추계치를 이용.

의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피용자의 결과를 원용하였다.

$$\ln(Y/L)_t = -1.6735 + 0.3564\ln(K/L)_t + 0.3089\ln(L_t)$$

(-3.11) (10.41) (4.28)

$$\text{Adj. R-square} = 0.993, F(2,18) = 1375.08$$

추정된 우리나라 파라미터의 값은 영국의 것들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들 소득분포의 경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분산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조사자료의 경우 서베이자료의 특성상 고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평균소득세율은 실효소득세율 5~6%, 기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4.5~9%, 건강보험 2~4% 등)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1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영국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피용자수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70.4%²⁶⁾ 수준으로 영국의 82.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III-1> 파라미터 값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추정치	영국(Parker, 2001)
α	0.9225	0.895
β	0.9225	0.895
p	0.8752	0.466
q	1.1543	2.356
τ	0.1500	0.250
n	0.7044(0.6505)	0.827

주: 괄호 안은 농업부문 포함시.

26) 2003년 비농업부문 피용자비중으로 농업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피용자 비중은 65.05%이며 이때 최적피용자비중은 61.97%로 여전히 약 3%포인트 차이가 있다.

III.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81

기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변수들은 위에 제시된 식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A변수값은 피용자 생산함수의 일계미분치로 도출되는 임금수준을 정규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w(\tau) = A\alpha n(\tau)^{\alpha-1}$$

$$A = \frac{1}{\alpha n(\tau)^{\alpha-1}} \text{ by normalizing } w(\tau)$$

B변수는 피용자 임금과 자영자 임금의 상대수준과 자영자 생산함수의 일계미분치를 이용하여 도출된다.

$$Ey(\tau) = B\beta(1 - n(\tau))^{\beta-1}$$

$$\text{Therefore } B = \frac{Ey(\tau)}{\beta(1 - n(\tau))^{\beta-1}}$$

피용자부문의 근로자 비중 $n(\tau)=0.7044$, 앞서 추정한 파라미터 값 $\alpha = 0.9225, \beta = 0.9225$, 그리고 가계조사자료에서 도출된 자영업자의 피용자 대비 평균소득수준 $Ey(\tau) = 1.01038$ 을 이용하여 두 값을 추정하였다. 즉 $A=1.05497, B=0.996552$ 로 추정되었다. 이때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수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계조사자료의 결과에 소득과약률은 80%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제IV장의 연구결과인 64~78%의 상한에 가까운 수치이다.²⁷⁾ 이는 소득과약률이 너무 낮을 경우 정책의 관심은 균형 노동배분 달성이 아니라 소득과약률 상향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파라미터와 일계조건을 이용하여 도출된 최적 피용자 비중은 0.675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0.7044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적 선호와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고려할 경우

27) 이러한 가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현재는 최적수준보다 약 3%포인트 높은 피용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즉 회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자영업자로의 이동 저해효과가 개인의 자영업자 선호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여 최적수준보다 피용자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자영업자 비중의 국가 간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른 소득과악률 수준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이 총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영업자 비중이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인 최적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영국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추정의 변화폭이 크고 급변하는 세정환경으로 인해 소득과악률의 변화가능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에 따른 최적 피용자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과악률 수준이 낮을수록 최적피용자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 폭도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과악률 변화방향에 따라 폭도 달라져 소득과악률 하락에 따른 최적피용자 비중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III-2> 소득과악률 변화에 따른 최적피용자 비중 변화

	최적 피용자 비중
소득과악률=80%(기준)	0.6759
소득과악률=75%	0.4756
소득과악률=85%	0.8201

현재의 개인별 직업선택결과가 개인별 소득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를 최적상태로 이행케 하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상태를 밀돌고 있는

III.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83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직업별 차등소득세율이 도출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을 증대시키고 피용자, 즉 근로소득자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차등소득세율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소득자별로 적용될 차등소득세율은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효세부담은 0.6~1.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위험기피도에 따라 1.3~3.5%포인트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세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표 III-3> 최적차등소득세율

	위험기피도(γ)		
	1/3	2/3	1
t*	0.0063	0.0109	0.0166
s*	0.0131	0.0227	0.0346

최적노동배분을 유도할 경우, 경제 내의 총소득뿐만 아니라 소득구조도 변화하게 되는데 총소득은 기존의 1.0031 수준에서 1.0032 수준으로 약 0.01%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존 직업 간 노동력구조(피용자 비중=0.7044)가 최적상태(피용자 비중=0.6759)와 그리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별로는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총소득이 8.86% 증가하고 비중이 축소되는 피용자부문의 경우 3.74% 감소하게 된다.

<표 III-4> 총소득의 변화

	현행(A)	최적상태(B)	변화율(B/A*100)
피용자	0.7044	0.6781	-3.74
자영자	0.2987	0.3251	8.86
합 계	1.0031	1.0032	0.01

개인별 세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구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등소득세율 적용으로 피용자의 경우 위험기피 정도에 따라 개인소득이 $-0.42\sim-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총소득의 감소폭보다는 낮는데 실효세율의 변화에 따른 직업이동에 따라 개인별 임금은 총소득의 감소폭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이 위험기피 정도에 따라 $0.82\sim3.33\%$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기피도에 따라 자영업자의 순소득 증가폭이 증가하는 것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해서 위험기피도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표 III-5> 순소득의 변화

	위험기피도(γ)		
	1/3	2/3	1
피용자	-0.42	-0.97	-1.64
자영자	0.82	1.94	3.33

연구결과가 추정된 파라미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의 변화폭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파라미터는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되는 파라미터 α, β 로 동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α, β 값이 동시에 같은 폭만큼 변화할 때, 최적 피용자 비중은 기존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즉 현재와 유사한 피용자 비중이 최적상태로 도출되어 차등소득세율의 수준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두 파라미터 중 한 파라미터만 5% 정도 변화시킬 때는 결과치가 크게 변동하였다. 우선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혹은 피용자 일방의 생산에 대한 노동탄력성이 증가할 경우

III.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85

동 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이 최적상태에서 요구됨을 알 수 있어 경제적 이론과 일치한다. 즉 피용자의 생산에 대한 노동탄력성이 증가하게 되면 최적수준은 현재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피용자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해 실효세율 경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변화의 폭은 피용자의 경우 탄력성 감소에 대해, 자영업자의 경우 탄력성 증가에 대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표 III-6>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EG(%)	n*	t*		
			$\gamma=0.33$	$\gamma=0.67$	$\gamma=1.00$
$\alpha, \beta, +5\%$	0.036	0.632	0.013	0.025	0.041
$\alpha, \beta, -5\%$	0.008	0.687	0.005	0.008	0.011
$\alpha, +5\%$	0.204	0.810	-0.016	-0.029	-0.042
$\beta, +5\%$	0.785	0.429	0.069	0.122	0.188
$\alpha, -5\%$	0.411	0.554	0.043	0.070	0.105
$\beta, -5\%$	0.135	0.775	-0.015	-0.025	-0.035

4. 소 결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영업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 선호와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은 시장에서의 직업선택 결과가 사회적 최적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개인의 선호도는 비금전적인 것으로 비록 개인의 경우 비금전적 선호를 포함한 자신의 효용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을 포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위험 또한 보험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동 부문으로의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결

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자영업부문(혹은 비법인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란요인을 줄이고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적 피용자 비중은 0.6759로 나타나 현재의 0.7044보다 약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회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자영업자로의 이동 제한효과가 개인의 자영업자 선호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여 최적수준보다 피용자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른 소득과악률 수준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이 총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영업자 비중은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인 최적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영국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개인별 직업선택결과를 최적상태로 이행케 하는 차등조세정책이 추진될 경우, 소득자별로 적용될 차등소득세율은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효세부담은 0.6~1.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위험기피도에 따라 1.3~3.5%포인트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세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들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률적인 변화는 피용자의 비중이 최적수준보다 높다는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혹은 피용자 일방의 노동탄력성이 증가할 경우(혹은 감소할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변동하였다. 소득과악률 변화가능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과악률 수준이 낮아질수록 최적피용자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 변화폭도 소득과악률 상승의 경우에 비

III.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이론적 접근 87

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와 피용자에 대한 차별적 소득세제는 노동시장의 직업선택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는 소득세제는 노동자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대규모가 균형수준보다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균형수준보다 높은 피용자규모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의 정책은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높아질수록 최적 피용자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수증대 등의 추가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과약률 제고정책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과약률 제고정책을 통해 충분한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개인의 직업선택결정과 연계된 소득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분석의 한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임금일자리의 부족이 야기하는 직업선택의 왜곡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된다면 근로소득자로의 노동공급을 증대시켜 임금하락을 유도하여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수준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 유인을 증대시켜 최적 근로소득자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가정된 자영업부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부문과 법인부문의 근로자당 자본량이 다를 것이며 이러한 자본량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에서 이용되는 모수 β 의 변화는 B의 변화를 초래하며 두 모수의 변화는 균형 근로소득자비중을 변화시키게 되어 향후 동 부문에의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어느 나라든지 종합소득세 형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에 입각하여 개별 납세자가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실제 과세에 있어 헤이그-사이먼스의 종합소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종합소득과세를 소득세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헤이그-사이먼스의 종합소득 개념에 가까워지도록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으로 평가된 납세자의 구매력에 대해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 분배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 인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세부담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제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과세당국에 노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 가 제공한 자료 등 다른 자료와의 상호대조(cross-check)가 가능하 여 탈세가 어려운 데 비해 자영업자는 비교적 탈세가 용이하여 실제 세부담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수평적 형평성이 보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89

장되지 않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취하는 주요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법정세부담에 차이를 두어 탈세로 인해 발생하는 실효세부담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소득세라는 이름하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명목상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두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도 있다.²⁸⁾ 그러나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평균 세부담이 근로자보다 작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자영업자의 평균 세부담이 근로자보다 낮은 것이 꼭 시정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Parker (1999)는 영국의 자료를 최적조세모형에 적용하여 정책 모의실험을 하였는데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위험을 기피하는 납세자는 자영업자보다 근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의 변화는 크지만 해고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 비해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 및 선택과는 무관하게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기보다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 자영업자

28) 구체적인 내용은 뒤(1. 법정세부담 비교)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29)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을 비교한 많은 연구들이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이 더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장의 '2.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 분석에 대한 문헌조사' 참조.

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이 근로자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er가 영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적 조세정책에 대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이 근로자보다 낮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고려한다면 자영업자에게는 높은 법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영국에서 적용하는 법정세율과 드러난 실효세율은 최적세율 모의실험 결과가 제시하는 세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Parker(1999)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 격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변동이 심할 경우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면 자영업자가 평생소득이 같은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100, 200, 300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두 기간 동안 각각 200을 벌어들인 납세자는 소득세로 총 80($=40 \times 2$)을 납부하면 되고 이때 총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20%가 된다. 하지만 첫 번째 기간에 300을 벌어들이고 다음 기간에 100을 벌어들인 납세자는 소득세로 100($=90+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총소득(400)에 대한 세부담(100)은 25%가 된다. 따라서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소득의 분산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을 근로자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명목세부담을 근로자보다 높게 만드는 방법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평균 실효세율 격차를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납세자 개인별로 보면 상당히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91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같은 두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득을 정확하게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다른 한 명은 50%만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은 평균적으로 실제 소득의 75%가 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평균 세율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자영업자는 소득의 1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75%, 정직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5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직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근로자, 정직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순이 될 것이다. 즉, 평균적으로 보면 공평한(fair) 것으로 보이는 조세제도가 개별 납세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며(unfair), 특히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정직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탈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은지, 차이를 두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나 두는 것이 좋은지, 세부담을 일치시키거나 차이가 나도록 할 때 그 수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부담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부담 격차가 바람직한 것인지, 적절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이용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로 세부담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추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분석이 꽤 이루어졌으나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분석 결과를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던 차에 2005년 여름에 통계청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실효세부담 격차를 추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에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 이 정보가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조사 자료상에 나타난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그 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를 추정해 본다.

1절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제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격차를 살펴보고, 2절 이하에서는 실효세부담을 추정하고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2절에서는 실효세부담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가능한 자료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2005년 여름에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에 드러난 소득과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추정하고 비교한다. 4절에서는 수요함수 추정방법을 통해 실제소득과 드러난 소득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정해 본다. 5절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법정세부담 비교

종합소득세제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93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허용하는 공제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 실제로 소득의 종류에 따른 법정세부담에는 차이가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차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공제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 세대주 50만원, 6세 이하 자녀 10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인가구 100만원, 2인가구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근로소득과 동일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사항 없음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고용보험: 전액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각 100만원 - 의료비 공제: 급여액 3% 초과분(500만원 한도) - 교육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전액 · 가족: 고등학교까지 200만원, 대학교 700만원 - 주택자금 공제: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1천만원 한도) -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급여 2,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장례, 이사에 대해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제: 실비공제 대신 선택시 연간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제: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 전액 · 지정기부금: 소득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공제: 근로소득과 동일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50만원 초과분)×30% · 공제액 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된 소득의 10% · 100만원 한도 - 재해손실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9.

사업소득의 경우를 먼저 보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으로 간주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 그리고 표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인적공제액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100만원, 부녀자 세대주 50만원의 추가공제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더해지는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란 가구원이 1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100만원, 2인 가구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목적상 근로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액은 사업소득의 비용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실효세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공제가 전혀 없는 경우 면세점은 500만원이 되며,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50%, 1,500만~3,000만원 15%, 3,000만~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가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공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별공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별공제 항목을 보면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결혼·이사·장례비에 대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 공제가 가능한 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60만원의 표준공제만 허용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만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활동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수입금액에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95

서 공제한 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근로자는 그러한 비용공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목들을 골라서 실비 수준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데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³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탈세의 가능성이 크므로 평균 실효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측면도 있다. 근로자가 항목별 특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생산비 및 생활비와 무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세액공제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산출된 세액 중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5%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제액은 연간 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있는데, 주로 비용보상 차원에서 가장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표 IV-2>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의 세부담 격차를 유발하는지 검토하였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근로소득인 경우와 모두 사업소득인 경우의 세부담을 구하여 비교한 것으로 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³¹⁾ 근로자의 경우 먼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다음에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였으며, 장애인 및

30) 근로소득공제는 표준적인 공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별공제는 표준공제에 더하여 항목별 공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

31) 가계조사 자료의 특성,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에 대해서는 본 장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부녀자 세대주에 대한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무시하였다. 가족수는 가계조사 자료에서 구한 분위별 가구당 평균 가족수를 적용하였다. 2004년의 자료를 보면 1분위와 2분위의 가족수는 각각 2.39명, 2.93명인 데 비해 3분위 이상의 가족수는 평균 3명을 넘었으며,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3.9명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 가족수는 3.54명이었다.

<표 IV-2> 법정세부담 비교

(단위: 천원, %)

분위	연평균 소득	근로자 세율(A)		자영업자 세율(B)	세부담 비교(A/B)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	8,959	0.00	0.00	5.99	0.00	0.00
2	15,971	0.00	0.58	8.38	0.00	6.93
3	20,485	0.00	1.21	10.33	0.00	11.76
4	25,142	0.39	1.80	11.53	3.39	15.63
5	29,183	0.82	3.19	12.38	6.65	25.77
6	33,620	1.67	4.80	13.04	12.83	36.83
7	38,676	2.80	6.27	13.67	20.44	45.89
8	45,238	4.64	7.71	15.20	30.49	50.71
9	53,940	6.58	9.17	17.02	38.69	53.86
10	79,280	11.33	14.27	20.21	56.07	70.58
전체 평균	40,700	3.34	6.84	13.96	23.92	48.99

특별공제 중에서는 대부분의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의 세 가지만을 고려하였으며, 그 외의 특별공제 즉, 주택자금 공제,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무시하였다. 공제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별 관련 비용을 모두 합한 총비용을 그 분위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수로 나눈 표본 평균치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여 최저 공제액으로 하였으며, 이 최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97

저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부담이 최고 세부담이 된다. 한편 관련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지출액을 모든 가구에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을 최고 공제액이라고 간주하여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 <표 IV-2>에 나타난 최저 세부담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특별공제의 역할이 커져서 4분위의 경우 특별공제를 잘 활용하지 못한 가구의 세부담이 잘 활용한 가구의 세부담보다 4.6배나 높은 데 비해 10분위의 경우에는 1.26배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세부담이 총소득의 3.34~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과세목적상 사업소득금액이 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표 IV-2>에서는 이 표에 나타난 연평균 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의 사업소득금액이라고 간주하고 인적공제와 표준공제(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1, 2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세부담이 거의 없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1분위의 경우에도 명목상 5.99%의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부담도 증가하여 10분위의 세부담률은 20%를 넘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세율이 13.96%가 된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2003년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 세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근로소득세는 지급액의 3.9%,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법정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크게 적고 소득이 많을수록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분위의 경우 근로자 세부담이 자영업자 세부담의 0~6.93%인 데 비해 10분위에서는 56.07~70.58%에 달한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에 대한 법정세부담에 이와 같이 차이가 나도록 하는 주된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탈세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세부담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한 세금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 분석에 대한 문헌조사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효세부담 추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실효세부담을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의 비율이라고 정의한다면 실효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실제 납부한 세금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의 규모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실제소득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방법이 없다. 민간 연구자들은 실제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과 납세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세부담을 추정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소득을 낮은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서베이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소득 규모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많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도 세원의 은폐 및 축소가 특히 어려운 특정 직업을 가진 납세자는 서베이에 응하여 자신의 소득규모를 정직하게 노출시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들의 소득-소비 관계를 다른 납세자들에게 적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담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양질의 서베이 자료의 존재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서베이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진다.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99

서베이 자료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진국의 연구들을 보면 서베이 자료에 나타난 자영업자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과 같다고 보고 근로자의 소득-소비 관계를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신고율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세부담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가계조사 자료에 2004년까지도 자영업자의 소득과 세금 납부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 세부담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성명재(1999, 2002)는 근로자의 소득-소비 관계를 추정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그 소득에 임의의 소득축소신고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한 후 그 결과 나타난 1인당 평균 세부담을 국세청 자료에서 나타난 실제 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과 비교하였다. 양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득축소신고율을 조정하여 같아질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소득축소신고율을 추정하였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문헌을 먼저 조사·정리하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서 다른 국가의 문헌들을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가계조사 자료에 자영업자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발표하지 않았으나 2005년 여름에 2003년도 및 2004년도 자료에 한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자료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국내문헌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자료가 공개된 다른 국가의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 국내문헌 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을 비교

하는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은 자료상의 문제이다. 국세청의 납세신고 자료는 신고된 소득에 대한 법정세부담을 보여줄 뿐이며, 과세소득을 얼마나 은폐·축소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득의 은폐·축소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소득을 조사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소득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자료가 없었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인데, 그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 가계조사 자료는 도시 지역(2003년부터 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는 비도시지역과 1인 가구를 포함한다. 둘째, 가계조사는 피조사자들이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되는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지출자료만 있고 소득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 2005년에 2003년과 2004년 분의 소득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아직 그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여 실효세부담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셋째,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는 5년 주기로 생성되며, 가계조사 자료와는 달리 소득과 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소득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강석훈·박찬용(2003)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의 소득이 실제소득을 대표한다고 보고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 소득 추정방법을 평가한 반면 현진권(2001)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보고된 자영업자 소득이 과소보고되었을 것으로 보고 소비함수 추정방식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였다. 이 두 자

32) 2002년까지는 ‘도시가계조사’였던 것이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가계조사’로 변경되었는데, 본장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계조사’라고 칭한다.

료 외에 소득과 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대우패널자료가 있었으나 현재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자료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연구방법도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표 IV-3>과 같다. 순수하게 가계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는 현진권·나성린(1994)과 성명재(1999), 성명재·전영준(1999), 성명재(2002), 성명재·김종면(2004)을 들 수 있다. 가계조사 자료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연구들은 근로자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였는데, 추정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진권·나성린(1994)은 근로자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였고, 성명재(1999)를 비롯하여 다른 연구들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소비함수가 아닌 소비함수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역소비함수로 표현하고 그 함수를 추정하였다. 역소비함수는 소득이 피설명변수이고 소비가 설명변수인 함수로서 강석훈·박찬용(2003)은 이를 소득함수라고 불렀다.

소비함수 추정방식과 소득함수 추정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강석훈·박찬용, 2003). 소비함수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모형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소득수준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확고한 미시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소득함수 추정방식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는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다시 소득을 추정하면 추정된 소득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소비 관계식 추정의 목적이 인과관계의 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알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계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월한 소득함수 추정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 강석훈·박찬용(2003)의 주장

이다. 이들은 또한 조사된 소득정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비함수 추정방식과 소득함수 추정방식으로 추정된 소득을 조사된 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소비함수 추정방식의 경우 고소득으로 갈수록 소득이 과대추정되고, 저소득으로 갈수록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함수 추정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회귀분석의 본질상 평균값 주위의 소득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되나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과대추정이 고소득가구의 경우에는 과소추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박찬용(2003)은 이 문제를 선형회귀분석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어느 쪽인가를 불문하고 이 추정방식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즉, 소비함수의 경우 소비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히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확실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큰 경우 위험을 기피하는 소비자는 소득증가분 중 많은 부분을 미래를 대비하여 소비하지 않고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탄력성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배준호·홍충기(1998)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함수를 각각 추정한 결과 근로자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탄력성을 가계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가계조사 표본에 포함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한편 이철인(1998)은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차 차분 형태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함수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소득과 소비 외에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들에 있어서도 각 연구들은 차이를 보인다. 현진권(2001)은 거주형태와 가구원수를, 성명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103

재(1999)는 가구원수와 가구주 교육수준을 사용한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추정한 데 비해 강석훈·박찬용(2003)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유형, 가구주 직업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강석훈·박찬용(2003)은 소득함수 추정시 소비의 자승을 독립변수에 넣어 소득과 소비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표 IV-3>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 문헌 분류

사용 자료	문헌 정보	주요 내용	사용된 변수
가계조사	-현진권·나성린(1994)	*세부담 비교 - 자영업자 소득 추정: 근로자 소비함수 자영업자에 적용 - 세부담 추정: 보고된 소득에 세법 적용 · 1987년 자영업자 소득자료 보고	거주형태, 가구원수
가계조사	-성명재(1999), 성명재·전영준(1999), 성명재(2002), 성명재·김종면(2004)	*세부담 비교 - 자영업자 소득 추정: 근로자 소득함수 자영업자에 적용 - 세부담 추정 ·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 추정소득, 탈루율, 세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 세부담 추정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대우패널	-이철인(1998)	* 탈세규모 추정방법에 대한 검정 - 1차 차분 형식의 소비함수 추정 · 근로자 소비함수가 자영업자 소비함수와 다르지 않음을 입증 - 보고소득과 추정소득을 비교하여 탈루규모 추정	거주형태,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비실태조사	-현진권(2001)	* 세부담 비교 - 근로자 소비함수 추정 - 자영업자 소득 추정 - 세부담: 보고자료	거주형태, 가구원수
가계+대우	-배준호·홍충기(1998)	* 세부담 비교 - 자영업자 소비함수 추정: 대우패널 · 근로자와 소비성향 다름 - 자영업자 소득 추정: 가계조사 - 세부담: 보고자료(소득세 등)	가구원수, 거주형태, 가구주 연령
가계+가구소비	-강석훈·박찬용(2003)	* 추정방법에 대한 고찰 - 소비함수 추정방법의 이론적 문제 ·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음 - 소득함수 추정 · 가능한 한 많은 설명변수 포함 · 추정결과: 고소득 과소, 저소득 과대 추정(소비함수 추정시 저소득 과소, 고소득 과대 추정)	소비 자승,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가구주 직업, 학력, 가구주 유형, 거주형태

자영업자의 진정한 소득을 추계하는 것 외에 실효세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계조사 자료는 2004년까지 자영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정보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조사 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부득이 세부담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재(1999)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율이 100%라는 가정하에 조사된 소득자료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추정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신고율을 먼저 추정하고 그 신고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신고소득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평균 세액에 상응하는 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추정된 자영업자 소득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양자가 같아지는 소득신고율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진권·나성린(1994)은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하였다.³³⁾ 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을 과세신고소득으로 간주한 것은 조사에 직면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한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에 응답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현진권(2001)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배준호·홍충기(1998)는 대우패널자료에 보고된 소득세 등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소득세 탈루율(또는 신고율)의 경우에도 이철인(1996)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과 조사된 소득을 비교하여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1999)에서는 1994년 51.8%, 1995년 50.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철인(1998)은 1994년 48.2%, 1995년 55.4%로

33) 1987년에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보고되었는데, 현진권·나성린(1994)은 이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근로자 소비합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자영업자 소득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였다.

추정하였다.

근로자의 소득신고율이 100%라는 가정하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자영업자의 세부담률이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나성린(1994)에 의하면 근로자가구의 실효세부담은 3.35%인 데 비해 근로자 외 가구의 실효세부담은 2.67%(1987년)였으며, 현진권(2001)에 의하면 근로자가구의 실효세부담은 1.09%, 근로자 외 가구의 실효세부담은 0.14%(1996년)였다. 배준호·홍충기(1998)는 근로자가구의 실효세부담을 3.0%, 자영업자가구의 실효세부담을 0.9%(1994/95년, 소득세 등)로 추정하였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의 각종 공제제도 및 세율을 추정된 신고소득에 적용하여 세부담을 추정한 성명재(1999, 2002)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이 5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자의 세부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외문헌 조사

국외의 유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을 직접 추정하기보다는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 즉,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으려면 Pissarides and Weber(1989)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유일호(1998)가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함에 따라 국내에도 잘 알려진 논문이다.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영국의 Family Expenditure Survey(FES)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FES 자료에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목한 것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실제소득보다는 과세신고소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실

제소득보다 과세신고소득이 적을 경우 납세자들은 세금과 관계 없는 서베이에서도 실제소득을 노출시키기를 꺼린다. 만에 하나라도 과세소득의 축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베이에서 과세신고소득보다 소득이 많다고 응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미 과세당국에 노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서베이에서도 은폐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서베이에 응답한 소득이 과세신고소득과 같다고 보고 실제소득과 신고소득 간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추정에서 사용한 핵심적인 가정은 첫째, 근로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므로 서베이 자료에 나타난 소득이 신고소득과 같으며 둘째,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Y_p)과 소비(C)의 관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수요함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앞서 검토한 대부분의 논문이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이론적으로도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는 가정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이 가정을 완화하여 선호의 차이를 허용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소비재의 성격에 따라 선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비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기에 용이한 재화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의 지출을 사업체에서 부담하면 가계조사에서 자영업자의 해당 항목 지출이 근로자보다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동차 연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에 선호도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음식료품의 소비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관계를 추정하여 소득축소신고율을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 i 가 조사에 응답한 소득수준을 Y_i , 실제소득을 Y_i^* , 장기적으로 납세자 i 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항상소득을 Y_p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소득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Y_i^* = k_i Y_i, \quad k_i \geq 1. \quad (IV-1)$$

$$Y_i^* = p_i Y_i^p \quad (IV-2)$$

p_i 와 k_i 는 각각 로그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고 $\ln p_i$ 와 $\ln k_i$ 의 평균을 각각 μ_p, μ_k 라고 하면 $\ln p_i$ 와 $\ln k_i$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p_i = \mu_p + u_i \quad (IV-3)$$

$$\ln k_i = \mu_k + v_i \quad (IV-4)$$

u_i 와 v_i 는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은 σ_u^2, σ_v^2 인 확률변수이다. 그리고 p_i 와 k_i 의 평균을 각각 \bar{p}, \bar{k} 라고 할 때 $\ln \bar{p}$ 와 $\ln \bar{k}$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bar{p} = \mu_p + \frac{1}{2}\sigma_u^2 \quad (IV-5)$$

$$\ln \bar{k} = \mu_k + \frac{1}{2}\sigma_{vSE}^2 \quad (IV-6)$$

한편 i 번째 가구의 j 재에 대한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p + \epsilon_{ij} \quad (\text{IV-7})$$

위의 식에서 Z_i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β_j 는 j재(여기서는 음식료품)의 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낸다. 여기에 식 (IV-1)~(IV-4)와 같이 표현되는 실제소득과 조사에 노출된 소득, 항상소득의 관계를 반영하면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 - \beta_j(\mu_p - \mu_k) - \beta_j(u_i - v_i) + \epsilon_{ij} \quad (\text{IV-8})$$

만약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한다면 두 추정식의 상수항 추정치의 차이는 $(\mu_p - \mu_k)$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근로자의 실제소득은 신고소득과 같고($\mu_k=1$) 항상소득과 현재소득이 같다면($\mu_p=1$),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과 소득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두 추정식의 상수항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추정식의 오차항의 분산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인데, 자영업자의 추정식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이 추정식과 오차항의 분산을 사용하여 소득신고율을 추정하였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 + \gamma_j SE_i + \eta_i \quad (\text{IV-9})$$

이 식에서 SE 는 자영업자가구를 1, 기타가구를 0으로 표현한 가변수이다. 이 식에서 조사된 소득 Y_i 는 내생변수로 가정하였으며, 몇 가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들을 추가하여 2단계 추정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분산이 다르므로 이 식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각각 자영업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분산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식을 추정하였다. 이 식의 추정계수들과 분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gamma_j = \beta_j \left[\mu_k + \frac{1}{2} (\sigma_{uSE}^2 - \sigma_{uEE}^2) \right] \quad (IV-10)$$

이 식에서 아래 첨자 SE 는 자영업자, EE 는 근로자를 나타낸다. 이 식과 앞서 제시한 평균 소득신고율을 나타내는 식 (IV-6)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신고율 평균치를 추정하는 식을 구할 수 있다.

$$\mu_k + \frac{1}{2} \sigma_{vSE}^2 = \frac{\gamma_j}{\beta_j} + \frac{1}{2} (\sigma_{vSE}^2 - \sigma_{uSE}^2 + \sigma_{uEE}^2) \quad (IV-11)$$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식 (IV-9)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는데, 사무직의 경우 실제소득이 신고소득의 1.28~1.54배이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1.51~1.64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사무직은 실제소득의 22~35%를 축소신고하고 생산직은 35~40% 정도를 축소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가구를 자영업자가구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인위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Allan and Iglarsh (1996)는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를 소득의 구성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소득규모가 같더라도 클러스터가 다르면 실효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1988 Individual Public Use Tax Files in the US라는 미국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의 추정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

나 그들의 연구는 신고소득에 대한 세부담 추정에 있어서도 소득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llan and Iglarsh(1996)는 납세자 표본을 소득수준에 따라 40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 내 가구를 소득의 구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클러스터(cluster)로 구분하였다.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SAS 프로그램의 FASTCLUS 명령을 사용하였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각 클러스터의 소득구성과 세부담의 관계를 추정하였는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큰 클러스터일수록 평균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yssiot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방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후 같은 자료 즉, 영국의 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개선점 중 첫 번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에 대한 선호의 차이와 소득축소신고율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소비 관계의 차이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Pissarides and Weber(1989)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추정치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선호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Lyssiot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수요함수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동시에 추정하여 선호의 차이와 축소신고의 영향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두 번째 개선점은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를 자영업자가구라고 인위적으로 구분하였는데 Lyssiot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 소득의 구성이 소비 및 소득신고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고 소득의 구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

시켰다.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추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지출함수가 2차 로그함수 형태(the quadratic and logarithmic form)를 띠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도출 과정은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w_{ih} = a_i + \beta_i (\ln Y_h^*) + \lambda_i (\ln Y_h^*)^2 \quad (\text{IV-12})$$

위의 식에서 w_{ih} 는 h 번째 가구의 i 번째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해당 가구의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Y_h^* 는 h 번째 가구의 실제소득을 나타낸다. Y_{kh} 를 h 번째 가구의 소득 중 k 번째 구성요소가 되는 소득이라고 하고 *표시가 붙은 것은 실제소득을, *표시가 없는 것은 노출된 소득이라고 하면 실제소득과 노출된 소득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kh}^* = \theta_k Y_{kh}, \quad k = 1, \dots, K_h \quad (\text{IV-13})$$

θ_k 는 관찰된 소득과 실제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실제 소득은 관찰된 소득의 θ_k 배가 된다. 관찰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theta_k \geq 1$ 이 된다. 식 (IV-13)을 식 (IV-12)에 대입하면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_{ih} = a_i + \beta_i [\ln Y_h + \ln (\sum_k \theta_k y_{kh})] + \lambda_i [\ln Y_h + \ln (\sum_k \theta_k y_{kh})]^2 \quad (\text{IV-14})$$

y_{kh} 는 k 번째 구성요소가 되는 소득(Y_{kh})을 총소득으로 나눈 것으

로서 총소득에서 k 번째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θ_k 는 가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가구마다 소득축소신고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k 번째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theta_k > 1$ 이라면 $\ln Y_h < \ln Y_h^*$ 가 될 것이며, 이 가구는 관찰된 소득과 실제소득이 같은 가구에 비해 사치재를 더 많이 소비하고 필수재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그러므로 θ_k 는 소비구조가 $\ln Y_h = \ln Y_h^*$ 인 경우의 소비구조와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찰된 소득이 얼마나 더 많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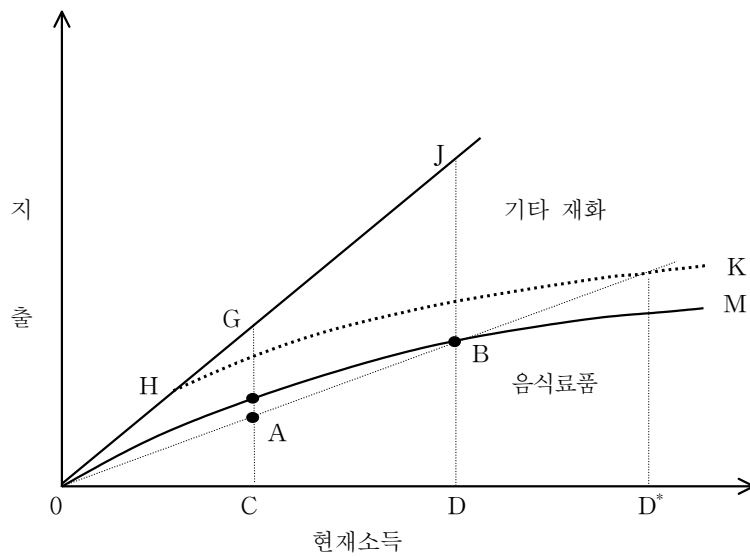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이 그림에서는 모든 가구의 소비함수가 같고 현재소득이 두 개의 재화 즉, 필수재(음식료품)와 사치재(기타)에 배분된다고 가정하였다. OM은 이 가구의 앵겔곡선(Engel Curve)을 나타낸다. A점은 소득이 OC라고 보고하고 AC만큼의 음식료품을 구매한 가구의 소비배분을 나타내는 점이다. AG만큼은 사치재에 지출하였다. 따라서 지출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소비의 비중은 AC/GC, GA/GC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OM으로 표현된 앵겔곡선에 의하면 이러한 소비의 비중은 실제소득이 OD와 같은 경우에 적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찰된 소득이 OC가 아니라 OD가 되어야 관찰된 소비구조와 실제 소비구조가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θ 는 OD/OC가 된다.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식 (IV-14)의 y_{kh} 를 자영업자가 구는 1, 기타가구는 0으로 표현한 가변수 SE로 대체하고 음식료품에 대한 추정식 하나만 추정할 것과 같다. 다른 소비의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에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음식료품에 대해서만 추정하였다. 추정식을 하나만 추정할 것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음식료품에 대한 수요 간의 분리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Pissarides and Weber(1989)가 간과한 또 한 가지 문제는 가구

간 선호의 차이 문제이다. 그림에서 가구의 엔겔곡선이 OM이 아니라 OK라면 축소신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θ 는 OD^*/OC 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 간 선호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IV-1] 가계소득과 소비함수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 (2004)는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w_{ih} = a_i + \sum_j b_{ij} z_{jh} + \delta_i y_h^s + \beta_i [\ln Y_h + \ln (\theta_0 y_h^w + \theta_1 y_h^s)] + \lambda_i [\ln Y_h + \ln (\theta_0 y_h^w + \theta_1 y_h^s)]^2 + \nu_{ih} \quad (IV-15)$$

여기서 z_{jh} 는 h번째 가구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구주 연령, 직업, 배우자의 취업 여부, 주거상태, 거주지 위치, 자동차 보유 여부, 세탁기 등 내구재 보

유 여부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우변 세 번째 항의 y_h^s 는 h번째 가구의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항은 사업소득 비중의 차이가 i재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구조의 차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선호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소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식 (IV-15)의 우변 세 번째 항은 전자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선호의 차이가 비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y_h^s 의 자승과 3승도 포함시켜 비선형관계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y_h^s 가 실제소득에서 실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 식의 y_h^s 는 노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비중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드러난 사업소득의 비중을 실제 사업소득 비중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y_h^w 는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리고 Y_h 는 h번째 가구의 총소득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θ_k 는 노출된 소득 중 k번째 구성요소를 실제소득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몇 배를 곱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theta_k$ 은 해당 소득의 축소신고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축소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θ_0 는 1이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축소신고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theta_1 \geq 1$ 이 된다.

이 모형은 이분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GMM(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GMM은 이론적인 값과 실제 값과의 가중거리(weighted distance)를 최소화하는 추정

34) 이 문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세미나에서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국내 자료에 이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할 때 자세하게 설명한다.

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오차항에 대해 특별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분산성을 해결하는 강력한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차항 ϵ_t , 도구변수의 집합 Z_t 로 구성된 비선형 모형을 생각해 보자. y_t 를 종속변수, x_t 를 외생변수, θ 를 계수라고 할 때 오차항과 도구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psilon_t = q(y_t, x_t, \theta)$$

$$Z_t = Z(x_t)$$

ϵ_t 와 Z_t 의 곱의 1차 모멘트(moment)를 m_n 이라고 하면 m_n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_n = \frac{1}{n} \sum_{t=1}^n m(y_t, x_t, \theta)$$

$$m(y_t, x_t, \theta) = q(y_t, x_t, \theta)' Z_t$$

GMM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S(\theta, V)$ 를 최소화하는 θ 를 찾는 추정방법이다.

$$S(\theta, V) = [n m_n(\theta)]' V^{-1} [n m_n(\theta)]$$

$$V = cov([n m_n(\theta)], [n m_n(\theta)]')$$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식 (IV-15)의 추정에서 소득(Y_h)과 소득의 구성을 나타내는 변수(y_h^s, y_h^w)들을 내생 변수로 간주하였는데, 이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도구변수에는 z_{jh} 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학력, 직업이 포함되었다.

추정결과를 보면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주류, 의복, 기타 개인을 위한 지출이 적고 음식료품, 연료 등과 같은 필수재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신고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θ_1 은 생산직(blue collar)의 경우 2.18, 사무직(white collar)의 경우 1.64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료품 하나만 추정한 것에 비해 훨씬 큰 수치로서 영국 GDP의 10.6%가 지하경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소비함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은 소비함수 형태에 대해 소비자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외에 다른 가정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소비자 선호의 차이에 기인한 수요의 차이와 소득의 축소신고에 따른 관찰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 왜곡을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표본가구를 임의로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소득 관계를 통해서 축소신고율을 추정하는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방법론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소비함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정도를 추정한다.

3.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실효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첫째는 제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앞의 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체계가 다르면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에 귀속되는 소득이 같으면 대체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작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며, 이는 근로자에게도 사업비용과 유사한 개념의 비용공제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과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으로서 세원의 의도적 은폐·축소에 의한 것이다. 근로자는 세원

의 은폐·축소가 거의 불가능한 데 비해 자영업자는 세원이 되는 소득을 은폐·축소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수입을 감추거나 축소신고할 수도 있으며 비용을 과다책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도 있다. 앞서 2절에서 검토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수입의 축소신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세부담의 격차를 검토한 Allan and Iglarsh(1996)는 법률적 차이와 비용의 과다책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Allan and Iglarsh(1996)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며 소득의 구성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효세부담 격차를 파악하고 법률적 차이와 비용의 과다책정, 수입의 과소신고를 구분하여 각각 세부담 격차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출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하고 그 수치가 세부담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한다.

가.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정보의 특징과 의미

본고에서 노출된 자료란 통계청이 조사해서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가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응답하여 제공한 소득과 세부담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다.

세부담을 계산하여 비교하기에 앞서 조사자료의 신뢰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료의 성격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 자료는 조사대상자가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분기 및 연간 단위로 통합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 등 다른 자료들은 대체로 조사 당시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하는 형태로 조사하는데, 그러한 조사방식에 비해 가계부 작성방식은 의도적인 자료조작의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³⁵⁾ 매월 일관성 있게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통계에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출된 소득과 세금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적어도 자영업자의 노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그래서 통계청의 가계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조사대상을 도시지역 거주 가구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명칭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바뀌었다.

납세자들이 조사에 응답하여 제시한 소득의 규모가 실제소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issarides and Weber(1989)가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다른 목적의 조사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드러난 소득 외의 수입을 노출시키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에 드러난 소득을 통계청의 조사에서 굳이 숨길 필요도 없으므로 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는 과세신고소득을 더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연구들은 대체로 조사자료상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세금 역시 실제 납부한 세금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³⁶⁾

조사자료에 공개된 납세관련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납세관련 정보가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정보가

35) 강석훈·박찬용(2003) 참조.

36) 본장 2절 참조.

성실하게 조사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을 띤다. 앞의 <표 IV-3>에 나타난 국내문헌을 보더라도 세부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한 현진권(2001), 배준호·홍충기(1998)는 조사된 세부담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을 추정·비교하였으며, 세부담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한 현진권·나성린(1994), 성명재(1999, 2002 등)는 보고된 소득 또는 추정된 소득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조사된 세부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세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에 자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이 대체로 높게 나왔다. 이는 세부담 추정시 소득공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세부담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논리적 근거로는 응답자가 세부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탈세 등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세부담 정보가 정확하다면 자영업자의 세부담 정보만 부실하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탈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미 드러난 납세 관련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사자료에 자영업자의 세부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세부담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상의 세부담을 동일한 자료상의 소득으

로 나눈 것이 법정세부담률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통계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각종 소득공제 및 비용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자영업자에게도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하기 전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목적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가계조사 자료에서 사업소득은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즉, 과세목적상의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업상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기장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비용차감 전의 수입금액과 과세목적상의 사업소득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즉,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할 부분이 사업소득에 포함된 채로 가계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소요된 필요경비보다 과세목적상의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실제 가계수입은 ‘총수입-실제 필요경비’인 데 비해 과세목적상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과세목적상의 필요경비’ 된다. 따라서 조사자료 작성자가 사업수행자가 아니고 그 배우자인 경우 양자 간의 혼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아닌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사자료 작성자가 부주의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 부분을 조사자료상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사자료에 드러난 소득은 과세목적상의 사업소득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대체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개인적인 생활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출된 소득에 대한 실제 세부담과 그 소득에 상응하는

법정세부담의 차이는 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탈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통계청에서는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 주택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여 파악하기 곤란한 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영업수지와 가계수지의 혼동에 따른 오차를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조사 자료상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하는데 있어 또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소득발생과 세금납부 시기의 차이 문제이다. 가계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가계부 형식으로 소득과 지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작성하므로 매일 소득과 지출 및 세금을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므로 5월에는 그 달의 소득과 그 달에 납부한 세금을 적게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은 실제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당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진다. 가계조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환급액은 다음 해 1월에 소득항목 중 기타 비경상 소득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여 소득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연도 이상의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계조사 자료는 패널자료가 아니므로 가구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세금의 정산시기와 소득의 발생시기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각 연도의 소득에 대해 그 해에 납부한 세금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패턴이 매년 같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즉, 2003년 1월에 전년도 세금을 정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환

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2004년 1월의 정산액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에 납부한 분위별 평균 세금을 2003년의 해당 분위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하였으며, 2004년의 세금은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3년과 2004년 소득세 납부액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자영업자의 10분위별 자료를 마치 패널자료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 소득의 연도별 변화가 커서 동일한 자영업자가 속한 소득분위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인별 세부담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분포를 검토한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균의 개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즉, 개인별 세부담 분포를 계산하기보다는 각 분위별 평균치가 나타내는 대표적 개인의 세부담을 계산하였다. 한 개인의 소득분위 변화가 다른 개인의 반대방향으로의 변화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득분위의 변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추정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소득분위별 세부담 분포와 관련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평균치의 경우 표본에 포함된 모든 가구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비교적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계조사 표본의 대표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과거 가계조사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농어촌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1인으로 구성된

37) 한국조세연구원의 세미나에서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년도 소득이 2,500만원인 가구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이 실현되는 95% 신뢰구간은 약 1,650만~3,600만원,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는 대략 2,000만~4,500만원으로 그 범위가 넓다.

가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조사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비도시지역과 1인 가구도 모두 포함하므로 표본의 분포 측면에서 가계조사 자료보다 대표성이 있으나 5년 주기로 생성되어 최근의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가계조사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편이다.

통계청에서는 가계조사 자료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명칭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바꾸고 조사대상을 도시지역 거주 가구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모집단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통계청은 표본과 모집단(인구주택총조사 대상) 간의 일치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중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중치는 거주지의 시·도별 구분과 거주형태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4절의 통계분석시 이 가중치 자료를 활용한다.

사용한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누락된 자료의 처리 문제이다. 가계조사는 조사대상가구가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된 결과를 보면 1개월 이상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가구들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12개월 모두 보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면 표본 축소로 인해 편의(attribu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계절성(seasonality)이 있는 경우 표본에서 탈락한 가구와 표본에 남아 있는 가구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이는 편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

성명재(2002)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누락된 자료를 추정·보충하는 근방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을 사용하여 편의를 조정하고, 조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친 자료를 분석하고 난 후 그는 편의 조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선택편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일치성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지만, 선택편의에 의한 편협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편의가 있더라도 실제 모수와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

가계조사 자료는 표본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구분해 놓고,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응답자가 월별로 가구의 구분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 일관되게 근로자가구 또는 근로자 외 가구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한편 근로자가구인 적도 있고 근로자 외 가구인 적도 있는 가구도 존재한다. 이렇게 가구구분이 중간에 변경되는 가구를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사실상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12개월 근로자가구인 경우에도 소득 중에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근로자가구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의 구분을 무시하고 가구소득의 구성에 따라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를 구분하였다. 둘 중 어느 쪽이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소득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구분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를 자영업자가구로 분류하였다.

한편 Allan and Iglarsh(1996)는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득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은 각 변수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표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통계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도 인위적인 구분을 하기보다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여 표본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없어 어느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클러스터 분석 결과 나타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 IV-4>와 같다. 2003년의 경우 근로자가구 또는 자영업자가구 중 하나로 구분된 3,101가구 중 약 55%인 1,701가구가 근로자가구로 분류되었으며 45%인 1,400가구가 자영업자가구로 분류되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총표본이 4,196가구인데 그 중 약 56%인 2,339가구가 근로자가구로, 약 44%인 1,857가구가 자영업자가구로 구분되었다.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가구구분을 기준으로 12개월 모두 근로자가구라고 응답한 가구와 12개월 모두 자영업자가구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가 7:3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소득의 구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는 자영업자가구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주는 근로자이지만 가구원 중 다른 사람이 자영업자이고 그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집단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2003년의 근로자가구 소득이 약 324만원으로 자영업자가구 소득 229만원의 1.4배였으며, 2004년에는 근로자가구 소득이 약 466만원으로 자영업자가구 소득 322만원의 1.5배에 달하였다. 소득의 구성을 보면 근로자가구는 경상소득의 84% 내외가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영업자가구로 분류된 가구는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내외이며, 가구소득의 30% 정도는 근로소득이다. 이는 자영업자가구 중에도 가구원 중 일부가 근로자인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 기타소득의 비중이 10% 내외인 데 비해 자영업자가구는 기타소득의 비중이 약 15% 정도 된다.

<표 IV-4>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 - 클러스터 분석결과
(단위: 가구, 원, %)

구 분		표본수	월평균소득	근로소득 비중 ¹⁾	사업소득 비중 ¹⁾
근로자가구	2003	1,701	3,239,827	84.72	5.46
	2004	2,339	4,663,799	83.64	5.36
자영업자가구	2003	1,400	2,288,640	29.75	56.81
	2004	1,857	3,215,072	31.87	54.98

주 : 1)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다.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률 비교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3년도 근로자가구 및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총표본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별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본수를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06가구, 105가구인 데 비해 5분위는 188가구, 7분위는 216가구,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240가구, 245가구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그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표본수가 줄어든다. 1분위는 164가구로 근로자가구의 1.5배에 달하였으나 10분위는 70가구로 근로자가구의 30%에도 못 미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127

쳤다. 분위별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합이 분위마다 다른 것은 각 분위에 이 두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표 IV-5>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2003년, 전체가구)

(단위: 가구, 원, %)

소득 분위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세부담 비교 (A/B)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A)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B)	
1	106	745,320	0.54	164	732,955	0.09	6.26
2	105	1,227,699	1.02	198	1,279,012	0.20	5.22
3	61	1,653,237	0.29	254	1,630,565	0.26	1.14
4	129	1,984,629	0.64	187	1,932,603	0.46	1.39
5	188	2,269,417	0.93	126	2,306,333	0.25	3.70
6	198	2,598,955	1.27	117	2,650,511	0.33	3.82
7	216	2,942,094	1.86	101	3,018,929	1.16	1.60
8	213	3,463,263	2.59	103	3,515,865	0.81	3.21
9	240	4,173,643	3.44	80	4,199,653	1.23	2.79
10	245	6,003,385	4.30	70	5,995,955	1.17	3.69
전체평균	1,701	3,146,203	2.67	1,400	2,266,037	0.65	4.11

해당 집단에 속한 전체 가구가 납부한 소득세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상소득으로 나눈 평균 세부담을 보면 근로자가구 전체 평균이 2.67%인 데 비해 자영업자가구는 0.65%로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약 4.1배가 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근로자가구는 1분위 0.54%, 10분위 4.3%로 대체로 누진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6분위를 10분위와 비교해 보면 10분위의 세부담이 중간계층 세부담의 4배 정도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분위 세부담이 0.09%이고 10분위 세부담이 1.17%로 전체적으로는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해서 보면 근로자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소득이 비교적

많은 7~10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경상소득의 0.81~1.23%인데 고소득계층 내에서는 소득에 따라 세부담률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3~6분위의 경우에도 세부담률이 0.25~0.46%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여 중간계층 내에서도 누진적인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계단과 같은 모양을 띠면서 증가하는데, 크게 세 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분위별 세부담 분포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통계적 오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IV-5>는 2003년과 2004년의 소득분위별 자료를 패널자료인 것처럼 가정하였으나 두 연도 사이에 표본가구들의 소득분위 이동이 많으면 이 가정이 유효하지 않으며, 이 경우 표에 나타난 자영업자의 분위별 세부담 분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IV-6>에서는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위와 동일한 분석을 하였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2003년과 유사하여 자영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중·저소득계층에 많이 분포되었다. 세부담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전체 평균이 2.69%로 2003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0.78%로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상승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율도 2003년의 4.1:1에서 3.4:1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2004년의 경우에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세부담은 뚜렷하게 누진적인 성향을 보여준 데 비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누진적인 경향을 보여주기 는 하지만 국지적으로 근접한 두 분위기를 비교할 때 소득이 많은 분위의 세부담률이 더 높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띈다.³⁸⁾

38) 4~6분위와 7~10분위.

<표 IV-6>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2004년, 전체가구)

(단위: 가구, 원, %)

소득 분위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세부담 비교 (A/B)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A)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B)	
1	197	731,895	0.19	171	808,157	0.25	0.75
2	119	1,276,780	0.09	289	1,347,522	0.14	0.62
3	101	1,677,725	0.57	323	1,723,769	0.27	2.10
4	161	2,042,427	0.63	263	2,025,284	0.52	1.22
5	245	2,384,509	0.73	183	2,402,141	0.24	2.98
6	266	2,759,997	1.12	161	2,718,009	0.16	7.12
7	276	3,146,086	1.58	153	3,162,845	2.47	0.64
8	302	3,674,726	2.45	127	3,665,395	0.95	2.58
9	327	4,369,872	3.39	105	4,512,934	1.90	1.78
10	345	6,316,230	4.67	82	6,547,137	1.43	3.26
전체평균	2,339	3,291,535	2.69	1,857	2,398,703	0.78	3.47

<표 IV-7>과 <표 IV-8>은 표본 중에서 세부담이 전혀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납세가구만을 대상으로 세부담률을 구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들에 나타난 특징과 정책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담이 있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세부담률을 구해 보면 당연히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세부담률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납세가구의 평균 세부담률과 전체가구의 평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크다. 근로자가구는 2003년과 2004년의 평균 세부담률이 전체가구를 표본으로 삼은 경우 각각 2.67%와 2.69%인데, 납세가구만을 표본으로 삼은 경우 각각 3.21%, 3.35%로 후자가 약 20% 정도씩 높다. 그런데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납세가구만 고려할 때의 평균 세부담률이 2.31%와 2.90%로 각각 전체가구를 고려한 경우의 3.6배 및 3.7배나 된다. 이는 자영업자가구 중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납세가구의 비중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표 IV-7>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2003년, 납세가구)

(단위: 가구, 원, %)

소득 분위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세부담 비교 (A/B)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A)	납세자 비율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B)	납세자 비율	
1	3	678,935	20.98	2.83	6	918,258	1.88	3.66	11.14
2	18	1,345,686	5.44	17.14	28	1,289,687	1.37	14.14	3.96
3	17	1,708,904	1.02	27.87	58	1,619,676	1.13	22.83	0.90
4	69	2,003,573	1.18	53.49	46	1,913,156	1.88	24.60	0.63
5	137	2,273,947	1.28	72.87	27	2,315,688	1.17	21.43	1.09
6	150	2,585,376	1.68	75.76	31	2,699,188	1.23	26.50	1.37
7	181	2,983,970	2.19	83.80	25	3,051,720	4.65	24.75	0.47
8	193	3,433,653	2.88	90.61	37	3,525,184	2.24	35.92	1.29
9	227	4,180,195	3.63	94.58	34	4,406,509	2.76	42.50	1.31
10	233	6,025,987	4.51	95.10	27	6,105,838	2.97	38.57	1.52
전체 평균	1,228	3,622,677	3.21	72.19	319	2,793,634	2.31	22.79	1.39

둘째,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를 표본으로 한 경우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4.11배(2003년), 3.47배(2004년)인 데 비해 납세가구만을 고려한 경우 각각 1.39배, 1.15배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정세부담 비교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 세부담이 근로자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한 가구의 세부담률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영업자들이 세원을 축소·누락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것 외에도 가계지출의 일부를 사업비용으로

IV.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분석 131

공제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8>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 비교(2004년, 납세가구)

(단위: 가구, 원, %)

소득 분위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세부담 비교 (A/B)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A)	납세자 비율	표본수	월평균 소득	세부담 (B)	납세자 비율	
1	4	826,635	8.23	2.03	10	943,201	3.67	5.85	2.24
2	6	1,432,965	1.55	5.04	41	1,393,508	0.96	14.19	1.60
3	30	1,730,409	1.86	29.70	60	1,716,709	1.47	18.58	1.27
4	78	2,069,381	1.28	48.45	69	1,995,274	2.00	26.24	0.64
5	143	2,370,470	1.25	58.37	27	2,325,705	1.70	14.75	0.73
6	197	2,757,704	1.51	74.06	36	2,665,273	0.72	22.36	2.11
7	204	3,151,545	2.13	73.91	46	3,211,280	8.08	30.07	0.26
8	268	3,697,464	2.75	88.74	35	3,582,287	3.53	27.56	0.78
9	309	4,373,827	3.58	94.50	43	4,632,101	4.52	40.95	0.79
10	331	6,321,597	4.86	95.94	40	6,290,170	3.05	48.78	1.59
전체 평균	1,570	3,939,662	3.35	67.12	407	2,923,519	2.90	21.92	1.15

세금을 납부한 가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다. 2004년의 경우 10개 분위 중 5개 분위에서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의 경우에도 3개 분위에서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많았다. 또한 그 외의 분위에서도 대체로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2배를 넘지 않았다.

셋째, 납세가구가 전체가구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2004년 1분위는 2.03%인 데 비해 9분위는 94.50%, 10분위는 95.94%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납세가구의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납세가구비율이 67.12%

였다. 한편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납세가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21.92%로서 근로자가구의 1/3에도 못 미쳤다. 분위별로는 1분위 5.85%, 10분위 48.78%로 소득이 많은 분위에서 납세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일관된 누진적 증가세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2~6분위에서는 14~26%로 각 분위별로 변화가 심하여 누진적이라 하기 어렵고 7~10분위에서는 28~49%로 대체로 누진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IV-9> 자영업자가구의 법정세부담과 조사된 세부담(2004년)

(단위: %)

소득분위	조사된 세부담		법정세부담	
	전체가구	납세가구	최고	최저
1	0.25	3.67	0.09	0.00
2	0.14	0.96	0.08	0.00
3	0.27	1.47	0.08	0.00
4	0.52	2.00	3.00	0.89
5	0.24	1.70	6.10	2.27
6	0.16	0.72	7.41	3.86
7	2.47	8.08	8.34	5.27
8	0.95	3.53	9.52	6.66
9	1.90	4.52	10.46	8.19
10	1.43	3.05	15.58	12.69
전체평균	0.78	2.90	5.52	2.01

<표 IV-9>는 자영업자의 분위별 평균적인 소득구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부담을 구한 후 이를 <표 IV-6>과 <표 IV-8>에 나타난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과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가구도 소득의 절반 정도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 비

해 법정세부담률이 상당히 낮다.

법정세부담률은 근로소득의 비중, 공제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는 세부담이 총소득의 2.01~5.52%일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검토한 납세가구의 평균 세부담률은 2.90%였다. 법정세부담률과 조사된 세부담률의 격차는 5분위를 넘어서면서 커지기 시작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 이는 비용의 과다 책정을 통한 탈세가 원래 세부담이 적은 저소득계층보다는 5분위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에서는 최저 법정세부담이 납세가구의 조사된 세부담의 4배를 넘으며, 전체가구의 조사된 세부담의 9배 정도 된다.

<표 IV-9>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법정세부담 계산에 있어 가구소득을 납세자 1인의 소득이라고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가계조사 자료에는 가구당 납세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소득자료와 납세자료의 시제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분위별 평균치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세부담을 구하였다. 따라서 <표 IV-9>에서도 가구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분위별 평균치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법정세부담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원수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가구당 1명만 소득을 벌어들이고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였다. 가구당 납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지므로 누진적 과세체계하에서는 동일한 소득을 1명이 벌어들이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정세부담은 <표 IV-9>에 나타난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득축소보고율 추정

본절에서는 가계조사에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얼마나 낮게 보고

되었는지 추정해 본다. 추정방법은 Pissarides and Weber (1989)의 방법론을 발전시켜 영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한다. 이 방법은 미시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비재 선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둘째,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인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소비함수 추정에 있어 특정한 재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화에 대한 소비함수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역으로 적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하지 않아도 축소보고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본고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_{ih} = a_i + \sum_{j=1}^k b_{ij} z_{jh} + c_i SE_h + d_i [\log(Y_h) + \log(y_h^o + e_1 y_h^s)] + f_i [\log(Y_h) + \log(y_h^o + y_h^s)]^2 + \epsilon_i \quad (IV-16)$$

여기서 C_{ih} 는 h번째 가구의 i재에 대한 소비를 나타내며, z_{jh} 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h번째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급 학교별 자녀수, 취업 자녀수, 65세 이상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주거면적, 주거지가 서울에 소재하는지 여부 등 총 10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SE_h 는 h번째 가구가 자영업자가구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가변수이다. 식 (IV-16)의 우변 세 번째 항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선호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c_i 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자영업자가구에서 i재를 더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지출의 일부

를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출로 간주하여 가계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c_i 가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용도의 차량을 사업비로 구입하고 연료비도 사업비로 지불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계지출에서 차량구입비 및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 자영업자가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예비적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c_i 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는 SE_h 대신 경상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y_h^s 를 사용하여 사업소득의 비중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y_h^s 는 실제 사업소득의 비중을 대변하는 변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도 조사자료상의 사업소득 비중을 실제 사업소득 비중을 대변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y_h^s 를 뒤에서 설명하는 소득변수(Y_h)와 함께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와 같이 y_h^s 를 실제 사업소득 비중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과 자영업자가구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인 SE_h 를 외생변수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추정해 보았는데, 후자의 설명력이 더 높고 추정계수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자의 추정결과만을 보고한다.

Y_h 는 h번째 가구의 보고된 경상소득을 나타내며, y_h^s 는 경상소득에서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y_h^o = 1 - y_h^s$ 가 된다. 앞의 3절에서 수행한 클러스터 분석 결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아 근로자가구에도 포함되지 않고 자영업자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구들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y_h^o 는 대체로 근로소득의 비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 포함된 가구의 평균적인 기타소득 비중은 각각 10%와 15% 내외이다.

e_i 은 보고된 사업소득에 몇 배를 곱해야 실제 사업소득과 같은 규모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_i 의 역수 즉, ' $1/e_i$ '이 소득의 보고율(=보고소득/실제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수요함수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보고된 소득과 실제소득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우변 네 번째 항의 []안은 h번째 가구의 실제소득에 로그를 취한 것과 같다.

추정대상이 되는 표본에는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가 모두 포함되며, 이들 가구의 오차항이 서로 다른 분산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추정식에서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M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³⁹⁾ 연립방정식의 GMM 추정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2단계 추정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우변의 설명변수 중 Y_h 와 y_h^s 를 내생변수로 가정하였다. 1단계에서 Y_h 와 y_h^s 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변수에 포함된 것 외에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몇 가지를 도구변수에 포함시켰는데, 가구주 교육연한과 그 제곱, 가구주 직업을 나타내는 가변수들이 이에 포함된다. 가구주 직업은 가계조사의 분류체계를 따라 사무직 근로자, 상인(자영업주),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39) GMM 추정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본장 2절의 '국외문헌 조사' 참조.

<표 IV-10>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¹⁾

	기본모형		변형모형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e_l (축소보고 지표)	1.5645	(14.02)	1.2815	(15.92)
$1/e_l$	0.64		0.78	
c_i (자영업자 소득 비중)				
음식료품	-0.8086	(-3.41)	-0.3132	(-1.59)
교통·통신	-1.4671	(-5.35)	-0.2209	(-4.61)
의복·교육·오락 등	-2.1875	(-3.39)	-0.0805	(-1.66)
$d_i(\log(\text{경상소득}))$				
음식료품	-61.6605	(-6.52)	-56.1105	(-5.71)
교통·통신	-59.1658	(-5.27)	5.7434	(2.16)
의복·교육·오락 등	-207.1980	(-7.63)	-5.3762	(-2.17)
$f_i((\log(\text{경상소득}))^2)$				
음식료품	1.8896	(6.81)	1.7334	(5.99)
교통·통신	1.8461	(5.60)	-0.1338	(-1.71)
의복·교육·오락 등	6.2820	(7.89)	0.1855	(2.56)
수정 R^2				
음식료품	0.3949		0.4403	
교통·통신	0.1546		0.3949	
의복·교육·오락 등	0.2570		0.5774	

주 : 1) 소득금액의 단위는 '원'인 데 비해 기본모형의 소비금액은 단위를 '백만 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추정과정에서 반복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소비지출 항목을 '음식료품'과 '교통·통신', '의복·교육·오락 등'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의복·교육·오락 등'은 교복 및 신발비와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 개인적 용도의 소비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가계조사에 나타난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 관련 지출과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 등 내구성 지출, 그리고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것이다.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한 패널자료 없이 당해연도 소득과 당

해연도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이와 같은 내구적인 성격의 지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IV-10>에서는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요약하였다. 기본모형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식 (IV-16)을 그대로 추정한 것인데, 추정계수가 총 43개로 모든 추정결과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고하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하였다.

먼저 관심의 초점이 되는 e_l 의 추정계수는 1.5645로 나타났으며, t 값이 14.02로 통계적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 이는 보고된 사업소득에 1.5645를 곱한 값이 실제소득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고된 소득이 실제소득의 64%(=1/ e_l) 정도임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선호의 차이(c_l)를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면 음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 의복·교육·오락 등 기타 지출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가구의 가계지출 중 일부가 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자영업자의 가계지출이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지출로서 사업비로 지불할 가능성이 적은 음식료품의 추정계수 절대치(0.8086)가 다른 추정계수 절대치(1.4671, 2.1875)보다 작은 것은 이 두 가지 설명에 모두 부합되는 결과이다.

수정된 R^2 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음식료품 소비함수는 0.3949인 데 비해 교통·통신비는 0.1546으로 설명력이 매우 낮다. 의복·교육·오락 등은 0.2570으로 음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의 중간 정도 된다. 모형이 설명력이 낮은 이유가 소비지출 항목에 따라 소비함수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에도 기본모형에서는 모든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소비함수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각 항목별로 적절한 형태의 소비함수를 찾아서 추정 한 것이 <표 IV-10>의 우측에 나타난 변형모형이다.

먼저 각각의 소비함수를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추정하여 각 소비지출 항목별로 적절한 함수 형태를 찾았는데, 그 결과 교통·통신과 의복·교육·오락 등의 경우 좌변의 종속변수인 소비금액에 로그를 취한 형태의 함수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모형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다른 변수가 모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실제소득 Y_h^*)의 변화에 따른 한계소비성향만을 계산해 보면, 기본모형은 식 (IV-17)과 같고 변형모형의 한계소비성향은 식 (IV-18)과 같다. 식 (IV-18)은 변형모형에서 소비성향이 그 재화의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본모형

$$\frac{\partial C_{ih}}{\partial Y_h^*} = \frac{1}{Y_h^*} (d_i + 2f_i \log(Y_h^*)) \quad (\text{IV-17})$$

변형모형

$$\frac{\partial C_{ih}}{\partial Y_h^*} = \frac{C_{ih}}{Y_h^*} (d_i + 2f_i \log(Y_h^*)) \quad (\text{IV-18})$$

음식료품에 대한 소비함수는 기본모형에 나타난 소비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교통·통신과 의복·교육·오락 등의 소비함수는 종속변수인 소비금액에 로그를 취한 형태의 소비함수를 가정하여 다시 추정하였다. <표 IV-10>에서 변형모형이라는 제목하에 정리되어 있는 추정결과를 보면 먼저 문제가 되었던 모형의 설명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함수 형태에 변화가 없는 음식료품의

경우 수정된 R^2 가 0.3949에서 0.4403으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교통·통신비의 경우 0.1546에서 0.394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의복·교육·오락 등의 경우에도 0.2570에서 0.5774로 대폭 개선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이 개선되면서 축소신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e_i 의 추정치가 1.2815로 낮아졌는데, 이는 기본모형에서 다른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축소신고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변형모형에서 자영업자는 통계조사시 실제소득의 78% 정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소득의 비중과 소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c_i 의 경우 기본모형에서와 같이 추정계수가 모두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모형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다.

가계조사 자료의 표본은 일부 가구를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모집단을 고르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 IV-10>에 나타난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는데,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축소신고 지표인 e_i 의 추정치는 기본모형 1.4315(t값 13.36), 변형모형 1.2515(t값 14.64)로 다소 낮아졌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본 원칙인 종합소득과세는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소득종류 간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차이, 세원의 은폐·축소 가능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세부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과세당국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문제를 하나 갖고 있다. 그 문제는 국내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에서 가구별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신뢰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최근에 ‘가계조사’로 이름을 바꾼 ‘도시가계조사’ 자료이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가 이 가계조사 자료에 의존하였는데, 이 자료는 2004년까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 납세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는 근로자가구에 대한 정보만으로 소득-소비 관계를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와 자영업자의 소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담 격차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이 외국의 연구들에 비해 방법론 측면에서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자료상의 제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여름에 통계청에서는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보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 납세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첨단 추정기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새로 발표된 보완된 자료에 나타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 납세액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장에서 첫 번째로 검토한 이슈는 각종 공제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나타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명목세부담 격차이다. 표본을 10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평균 소득에 법률을 적용하여 법정세부담을 계산하였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의 내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져 법정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세전소득의 3.34~6.84%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3.96%로 사업소득의 세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법정세부담이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2분위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0~7%에 불과한 데 비해 10분위에서는 56~7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세부담 격차가 줄어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가 대체로 중·저소득계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정세부담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탈세가 유리한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사후적으로나마 보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세부담의 격차는 다른 한편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서 자영업자의 탈세를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 검토한 두 번째 이슈는 가계조사 자료상에 나타난 세부담이다. 즉, 조사자료에 드러난 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을 계산하였다. 2004년의 근로자가구 세부담률을 보면 전체가구 평균치는 2.69%이고 납세가구 평균치는 3.35%였다. 한편 자영업자가구는 전체가구 0.78%, 납세가구 2.90%로 자영업자의 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았다. 특히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세부담 격차가 더 커서 평균적으로 근로자 세부담이 자영업자 세부담의 3.47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납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15배였다. 납세가구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0분위 중 5개 분위에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7~9분위에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 세부담의 26~79%에 불과하였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누진적인 성향이 강한 데 비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누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조사 자료상의 소득에 법률을 적용하여 법정세부담을 계산하고 이를 조사된 세부담과 비교해 보았다. 가계조사 자료상의 사업소득이 과세목적의 사업소득과 같다면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세부담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자료에서 사업소득에 포함된 소득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간주되어 과세목적의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과세목적상의 사업소득과 실제 가계운영 목적의 소득에 차이가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부주의 또는 혼동 등의 이유로 그 차이가 조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가구와 납세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납세가구의 평균 세부담이 대체로 법정세부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가구의 경우에는 가계조사 자료상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오류가 납세가구보다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계조사 자료상의 소득이 실제소득과 얼마나 다른지 추정해 보았다. 근로자는 조사에 응하여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한다고 가정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자영업자의 드러난 소득이 실제소득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는지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소비함수의 형태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는데, 조사자료에 나타난 사업소득이 각각 실제소득의 64%와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축소신고율의 차이도 추정해 보았는데, 유의적인 차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한 수평적 형평성의 저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법정세부담은 자영업자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조사 자료에서 드러난 소득대비 세부담률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 자료상의 사업소득은 실제소득의 80%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다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가 모두 탈세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어서 탈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세부담률을 보면 자영업자 중 소득세 납부가구의 2004년 평균 세부담률은 2.90%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정세부담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평균 세부담률은 0.78%로 상당히 낮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납세가구의 세부담률이 3.35%로 전체가구 평균 2.69%의 1.25배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 중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 세부담을 균등화시키려는 노력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법정세부담이나 실효세부담이 상당한 정도의 누진성을 보이거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누진성이 매우 약하다.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과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 간에 약간의 누진성이 보일 뿐 중간 이하 계층과 중간 이상 계층의 그룹 내에서는 세부담의 누진성을 입증할 수 없다. 중간 이상 계층의 세부담 분포를 보면 최고 소득계층보다는 오히려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탈세의 기회가 실질적인 세부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서 세율체계의 누진성이 중상위 소득계층 중에서 탈세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장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가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별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패널자료가 필요한데 가계조사 자료는 패널자료가 아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장에서는 표본을 소득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나누고 분석대상이 된 두 연도의 각 분위별 평균치가 패널 자료를 형성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표본 전체의 평균치를 분석하는 데는 이러한 가정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수준별 세부담 분포를 분석·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패널 등 패널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만큼 지속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이슈는 많지 않다. 과세형평성 문제는 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낮은 소득과약률에 기인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회피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란 원칙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국민의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과약 현실과 과세형평성 달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소득세제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각종 특별공제 등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나타나는 세제측면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조세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약수준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차등적인 세부담의 절대적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감소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부담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대한 고려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러한 소득변동 위험이 낮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험요인은 보험시장을 통해 회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회피적

(Risk-averse)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두 직업 사이의 위험도 차이가 소득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개인의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로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노동시장 구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구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하여 소득종류별 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실효소득세부담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부담이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부담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세부담의 경우 자본축적의 저해, 탈세가능성 등으로 유도되는 자영업자 감소효과가 탈세유인 증가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증가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한 특징으로 여겨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임금일자리의 부족 등에 대한 명시적 고려가 없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소득세부담(사회보장세 포함)의 증대는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세행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모형의 구성과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최적 피용자 비중은 0.6759로 나타나 현재의 0.7044보다 약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회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동 제한효과가 개인의 자영업자 선호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여 최적수준보다 피용자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른 소득과악률 수준(80%)을 가정할 경우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이 총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영업자 비중은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인 최적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영국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개인별 직업선택결과를 최적상태로 이행케 하는 차등조세정책이 추진될 경우, 소득자별로 적용될 차등소득세율은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효세부담은 0.6~1.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위험기피도에 따라 1.3~3.5%포인트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세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들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률적인 변화는 피용자의 비중이 최적수준보다 높다는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와 피용자에 대한 차별적 소득세제는 노동시장의 직업선택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는 소득세제는 노동자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대규모가 균형수준보다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수준보다 높은 피용자규모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등의 정책은 그 타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악률을 주어진 조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소득과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세수증대, 납세비용 감소 등의 추가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자영업자 소득과약을 제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어진 소득과약에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차별적 소득세제의 운영보다는 가능한 소득과약을 제고정책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과약을 제고가 도달가능한 일정수준에 이른 후에 보다 적극적인 차등소득세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의 한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임금일자리의 부족이 야기하는 직업선택의 왜곡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된다면 근로소득자로의 노동공급을 증대시켜 임금하락을 유도하여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수준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 유인을 증대시켜 최적 근로소득자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어 주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가정된 자영업부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부문과 법인부문의 근로자당 자본량이 다를 것이며 이러한 자본량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에서 이용되는 모수 β 의 변화는 B의 변화를 초래하며 두 모수의 변화는 균형 근로소득자비중을 변화시키게 되어 향후 동 부문에의 추정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았는데,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한 평균 세부담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법정세부담률이 근로자 3.34~6.84%, 사업소득자 13.96%인 데 비해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4년 평균 세부담률은 근로자 2.69(전체가구)~3.35%(납세가구), 자영업자 0.78~2.9%로 자영업자가구가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추정모

형에서 가계조사 자료상의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각각 실제소득의 64%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다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가 모두 탈세를 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탈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고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납세가구만 볼 때 자영업자가구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상 세부담률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체평균의 3.72배로 근로자가구의 1.25배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상대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가구 중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의 세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 세부담을 균등화시키려는 노력이 성실한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법정세부담이나 실효세부담이 상당한 정도의 누진성을 보이거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누진성이 매우 약하다.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과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 간에 약간의 누진성이 보일 뿐 각 집단 내에서는 세부담의 누진성을 입증할 수 없다. 중간 이상 계층의 세부담 분포를 보면 최고 소득계층보다는 오히려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탈세의 기회가 실질적인 세부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을 주며, 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서 세율체계의 누진성이 중상위 소득계층 중에서 탈세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석훈·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9, pp. 29~49.
- 국세청, 『2004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국세청 보도자료, 2005.
-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03-08,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배준호·홍충기,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분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3, pp. 51~76.
- 성명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정책보고서 99-05,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 ,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한국조세연구원, 2001. 11.
-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2-01, 한국조세연구원, 2002. 6.
- 성명재·김종면,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4-03,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성명재·전영준,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 유일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

- 구원, 1998. 12, pp. 39~66.
- 이철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탈루규모의 추정』,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pp. 67~96.
- 재정경제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재정부 보도자료, 2004.
-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재정부 보도자료, 2005.
- , 『조세개요』, 2005. 9.
- 진병목·원종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2, pp. 191~209.
- , 『조세행정의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pp. 15~38.
- 현진권·나성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조세행정과 소득재분배』, 연구논문집 96-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pp. 93~129.
- Allan, Ronald Gage and Harvey J. Iglarsh, “A Cluster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8, No. 1, Spring 1996, pp. 31~46.
- Folster, Stefan, “Do Lower Taxes Stimulate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9, 2001.
- Giertz, Seth H., “Recent Literature on Taxable-Income

- Elasticities,” Technical Paper Seri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cember 2004.
- Kanbur, S.M., “Risk Taking and Taxation: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5, 1981.
- Kihlstrom, Richard and Jean-Jarque Laffont, “A General Equilibrium Entrepreneurial Theory of Firm Formation Based on Risk Aver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 Long, James, “The Income Tax and Self-Employment,”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1, 2001.
- Lyssioutou, Panayiota, Panos Pashardes and Thanasis Stengos, “Estimates of the Black Economy Based on Consumer Demand Approaches,” *The Economic Journal*, Vol. 114, July 2004, pp. 622~640.
- Parker, Simon C., “The Optimal Linear Taxation of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3, 1999, pp. 107~123.
- _____, “Risk, Self-Employment and Differential Income Taxation,” *The Manchester School*, Vol 69, No 1, 2001.
- _____, and M. Robson,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1, No. 2, 2004.
- Pissarides, Christopher A. and Guglielmo Weber, “An Expenditure-Based Estimate of Britain’s Black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9, 1989, pp. 17~32.
- Robson, Martin and C. Wren, “Marginal and Average Tax Rates and the Incentive for Self-Employment,” *Southern*

- Economic Journal*, Vol. 65, No. 4, 1999.
- Zanardi, Alberto, "Income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Evidence from Italian Fiscal Audits,"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52nd Congress, August 199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안종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추정과 함께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자영업부문의 회피할 수 없는 위험, 개인의 자영업 선호도를 포함한 최적 노동배분과 이를 위한 차등소득세율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직업선택모형에 따른 최적 근로자비중은 기존의 높은 자영업자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재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공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법률상으로는 동일한 규모의 소득에 대해 자영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 비해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득 대비 세부담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조사 자료상의 자영업자 소득은 실제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Equity of income tax burdens between employee and self-employed

Byung Mok Jeon, Jong seok An

This paper analyzes income under-report problem of self-employed and optimal labor mix when we include uninsurable risk of self-employed income and a preference for being one's own boss as key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self-employment. Using a simple occupational choice model, we show that two factors can cause efficiency losses in a market. Since the optimal employee ratio is lower than the current level, we need to be cautious in further increase of income deduction only for employee. This paper also estimates effective tax burden of urban households in Korea using the data in the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t shows that the ratio of tax burden of the employed households to general income reported in the surve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 It also estim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income and the reported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mployed households reported their income honestly. It concludes that the reported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amounts to about 70% of real income.

<著者略歴>

전병목

서울대학교 자연공학과 졸업
미국 Rice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안종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5-0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2005년 12월 22일 인쇄
2005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전병목·안종석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일 지 사

한국조세연구원의 2005

ISBN 89-8101-21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